

발간등록번호

11-1240000-001660-01

『사업체기간제근로자현황조사』
2023년 정기통계품질진단 결과보고서

2023 Regular Assessment Report

한국통계진흥원

2023. 12.

본 보고서는 한국통계진흥원이 통계청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진단한 결과입니다. 보고서의 내용은 한국통계진흥원(연구진)이 진단한 내용이며, 통계작성기관의 확인을 거쳐 작성했습니다.



제 출 문

통계청장 귀하

본 보고서를 “『 사업체기간제근로자현황조사 』 2023년 정기통계 품질진단” 과제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3년 12월 31일

연 구 원 : 충북대학교 이태민 교수

조사표·유사통계
연 구 원 : 한국통계진흥원 오유진

표 본 연 구 원 : 한국통계진흥원 이영민

M D 연 구 원 : 한국통계진흥원 오유진

목 차

결과보고서 요약문	1
정기통계품질진단 흐름도	2
제 1 장 진단대상통계 개요	3
제 2 장 통계품질진단 결과	7
제 1 절 통계작성절차별 진단결과	7
1. 통계작성 기획 진단결과	7
2. 통계설계 진단결과	10
3. 자료수집 진단결과	13
4. 통계처리 및 분석 진단결과	17
5. 통계공표, 관리 및 이용자서비스 진단결과	20
6. 통계기반 및 개선 진단결과	24
제 2 절 품질차원별 진단결과	26
1. 관련성	26
2. 정확성	27
3. 시의성/정시성	28
4. 비교성/일관성	28
5. 접근성/명확성	29
제 3 절 진단결과 종합표	31
제 3 장 개선과제별 개선방안	33

제 1 절 현장조사 사례집 마련을 통한 조사 관리체계 고도화	34
1. 현황 및 문제점	34
2. 세부 개선과제 내용	34
제 2 절 정확성 평가를 위한 주요항목 상대표준오차 제공	35
1. 현황 및 문제점	35
2. 세부 개선과제 내용	35
제 3 절 조사협조 필요성 인식 제고 위한 유용한 정보제공 검토	36
1. 현황 및 문제점	36
2. 세부 개선과제 내용	36
제 4 절 개선과제 요약	37
제 4 장 발전전략 및 중장기 로드맵	39
붙임1) 자료수집 체계 점검 결과	41
붙임2) 이용자 요구사항 반영실태 점검 결과	51
붙임3) 공표자료 오류 점검 결과	63
붙임4) 조사표 설계 및 유사통계 비교·분석 점검 결과	67
붙임5) 표본설계 점검 결과	79
붙임6) 마이크로데이터 품질 점검 결과	95
부 록. 통계품질진단 개요	105
1. 통계품질진단의 개념	105
2. 통계품질진단 체계	106
3. 통계품질 수준 측정	111

표 목 차

<표 1> 사업체기간제근로자현황조사(2022 기준) 개요	3
<표 2> 통계작성 기획 진단결과	9
<표 3> 통계설계 진단결과	11
<표 4> 자료수집 진단결과	14
<표 5> 통계처리 및 분석 진단결과	18
<표 6> 통계공표, 관리 및 이용자서비스 진단결과	21
<표 7> 통계기반 및 개선 진단결과	24
<표 8> 진단결과 종합표	31
<표 9> 개선과제 요약	37

그 립 목 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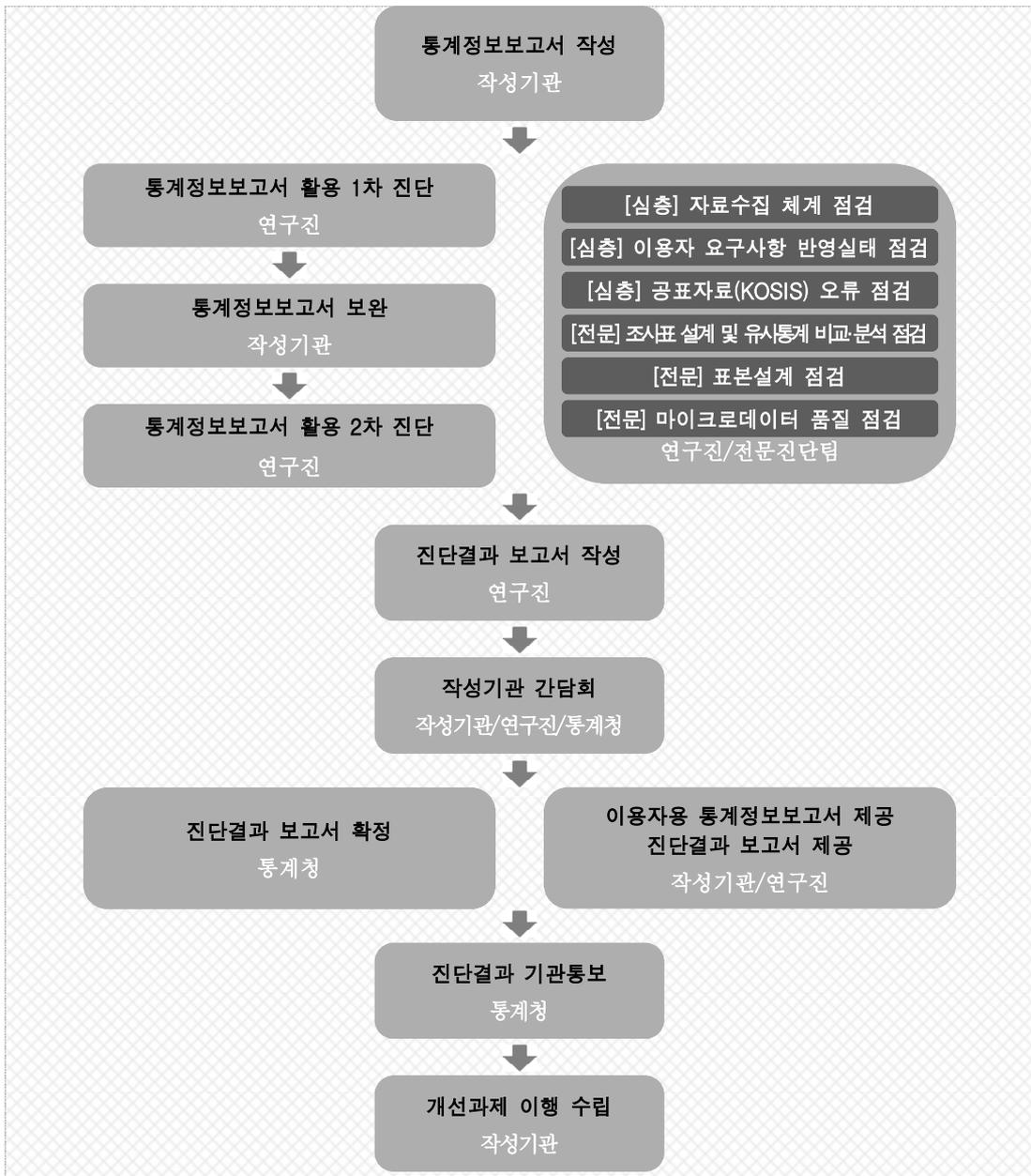
<그림 1> 통계품질진단 흐름도	2
<그림 2> 『사업체기간제근로자현황조사』 품질차원별 진단점수(방사형 그래프)	26

결과보고서 요약문

진단통계명	「사업체기간제근로자현황조사」 (고용노동부)
주 제 어	기간제근로자, 조사통계, 품질진단
진 단 기 간	2023. 2. ~ 2023. 12.
진 단 기 관	통계청, 한국통계진흥원
연 구 진	이태민, 오유진, 이영민
<p>이번 진단에서 활용한 통계는 2023.03.31.에 공표된 2023년 사업체기간제근로자 현황조사(2022 기준)이다.</p> <p>본 진단은 사업체기간제근로자현황조사의 전반적인 품질 상태를 살펴보고, 본 조사를 통해 제공되는 국가통계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통계품질진단은 통계작성기관에서 작성한 「통계정보보고서」를 기반으로 한 통계작성절차별 작성실태 점검, 자료수집 체계 점검, 이용자 요구사항 반영실태 점검, 공표자료 오류 점검, 조사표 설계 및 유사통계 비교·분석 점검, 표본설계 점검, 마이크로데이터 품질 점검을 근거로 종합적인 평가를 진행하였다.</p> <p>사업체기간제근로자현황조사에 대한 통계작성절차별 진단결과를 살펴보면, 통계작성 기획 4.5점, 통계설계 4.5점, 자료수집 4.9점, 통계처리 및 분석 4.6점, 통계공표, 관리 및 이용자서비스 4.4점, 통계기반 및 개선 4.5점으로 평가되었다. 통계공표, 관리 및 이용자서비스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었는데, 이는 마이크로데이터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p> <p>품질차원별 진단결과는 관련성 4.5점, 정확성 4.7점, 시의성/정시성 5.0점, 비교성/일관성 5.0점, 접근성/명확성 차원에서는 2.7점으로 나타났다. 특히 접근성/명확성 차원에서의 진단 결과가 낮게 평가되었는데 이는 공표방법의 다양화 및 마이크로데이터 제공 필요성이 확인되었기 때문이다.</p> <p>그리고 자료수집 체계 점검에서 응답자 조사협조 필요성 인식 제고를 위한 유용한 정보제공 및 현장조사 사례집 구비, 이용자 요구사항 반영실태 점검에서는 조사항목 개선, 통계보도자료 개선, 마이크로데이터 제공, 설명자료 포함된 조사통계 결과보고서 제공, 타 통계 연결변수 도입 검토, 통계 전략개선 수립 위한 전문가 의견 수렴 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진단되었다. 공표자료 오류 점검에서는 특이사항이 없었으며, 조사표 설계 및 유사통계 비교·분석 점검에서는 조사표 수록사항 보완, 조사표 설계 및 변경절차 보완, 표본설계 점검에서는 산업분류별/사업체규모별 무응답현황 파악, 추정식과 분산식을 근사식으로 제공, 주요항목에 대한 상대표준오차 제시, 마이크로데이터 품질 점검에서는 MDIS 통한 마이크로데이터 제공 필요성이 확인되었다.</p> <p>이를 토대로 품질진단 결과 도출한 개선과제로는 정확성 평가를 위한 주요항목 상대표준오차 제공이 단기과제로, 현장조사 사례집 마련을 통한 조사 관리체계 고도화와 조사협조 필요성 인식 제고 위한 유용한 정보제공 검토가 중기과제로 도출되었다. 발전전략 및 중장기 로드맵으로는 통계 개선전략 수립을 위한 전문가 의견 수렴 정례화를 제안하였다.</p>	

정기통계품질진단 흐름도

정기통계품질진단은 하단의 진단절차에 따라 진행되며, 본 보고서는 진단 결과를 종합 정리한 진단결과 보고서이다. 통계품질진단의 개념 및 체계, 수준 측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보고서 마지막 부분의 부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 통계 품질진단 흐름도

제 1 장 진단대상통계 개요

<표 1> 사업체기간제근로자현황조사(2022 기준) 개요

기본 정보	작성유형	• 조사통계
	통계종류	• 일반통계
	승인번호	• 118042
	승인일자	• 2010년 4월 15일
	법적근거	• 통계법 제18조(통계작성의 승인)에 의해 승인 ※ 관련법령: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조사목적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효과 분석 및 기간제근로자 등에 관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주요연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0. 4. 「사업체 기간제근로자 현황조사」 일반통계(제118042호) 작성 승인 • 2010. 5. 조사항목 일부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 종사자(상용+임시·일용+기타)→전체 근로자(상용+임시·일용, “기타”제외) - 조치사항 중 “③기타” → “③계속고용, ④기타” 분리 • 2011. 4. 조사항목 일부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직 세부유형 변경(계약기간 만료, 개인사정, 회사사정→전월 마지막 영업일 계약 만료자 수) • 2014. 1. 조사주기 및 조사항목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주기: 월 → 분기 - “기간제법 적용 근로자 현황” 범위 확대(근속기간 1년 6개월 이상 → 전체) - 이직 세부유형 변경(전월 마지막 영업일 계약 만료자 수→계약기간 만료 전(정규직 전환)) • 2015. 3. 근속기간 기준 변경, 조사항목 세분화 및 조사표 순서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간제근로자 현원 및 입·이직현황, 계약기간 만료자 조치사항의 근속기간 기준 변경 ※ (변경전후) ‘1년 6개월 미만 → 1년 6개월 이하’, ‘1년 6개월~2년 미만 → 1년 6개월 초과~2년 이하’, ‘2년 이상 → 2년 초과’ - 근속기간별 기간제근로자 현황 세분화 - II.기간제근로자 현황과 III.기간제법 적용근로자 현황 순서 변경 • 2017. 조사주기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주기: 분기 → 반기 • 2020. 표본개편 및 작성 통계분류 기준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계분류) 한국표준산업분류 10차 적용

일반 특성	조사주기	• 반기
	조사대상 범위	• 상시(상용+임시일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공무원 재직기관 포함,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과 국제 및 외국기관을 제외한 나머지 산업)
	조사대상 지역	• 전국
	조사항목	• 사업체 현황(사업체명, 사업내용, 주소, 응답자, 전체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수) • 기간제 법적용 근로자현황(특성별 근로자수, 계약만료 시 조치사항 - 근속기간별) 등 • 기간제근로자 현황(기간제근로자 수, 입직자·이직자수(계약만료전-정규직 전환), 근속년수별)
	자료수집방법	• 면접조사
	조사체계(위탁, 영역포함)	• 조사대상→고용노동부
	조사대상기간/조사기준시점	• 6월(상반기) 및 12월(하반기) 마지막 영업일
	조사실시기간	• 7월(상반기) 및 1월(하반기)
결과 공표	공표주기	• 반기
	공표시기	• 조사기준 반기 익익익월
	공표범위	• 전국
	공표방법	• 전산망(인터넷) • 사업체기간제근로자현황조사 보고서 http://kosis.kr http://laborstat.moel.go.kr
조사 통계 특성	전수/표본구분	• 확률표본
	모집단	• 사업체노동실태현황 및 전국사업체조사의 공공부문 사업체
	표본추출틀	• 사업체노동실태현황 및 전국사업체조사 공무원 재직기관(공공부문)의 전체 근로자(상용+임시일용, 공무원 포함) 5인 이상 사업체(기관)
	추출단위	•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산업 및 해당 사업체의 상용근로자 수 규모에 따라 층화추출
	조사대상 규모	• 조사대상 : 전산업* 상시(상용+임시일용)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과 국제 및 외국기관을 제외한 나머지 산업 • 표본규모 : 10,000개 사업체
통계 활용	마이크로데이터 보유	• 보유
	마이크로데이터 제공	• 미제공 - 미제공사유: 조사내용이 법 관련 항목으로 구성되어 자료이용자가 작성기관 정책부서로 제한적이며, 이용자 범위가 넓지 않고 해석 및 분석범위가 제한적
	행정자료 활용 여부	• 해당없음

	KOSIS 제공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공
	국제기구제출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제출
	자료 이용시 주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시(상용+임시일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기간제근로자 현황 및 그 중 기간제법 적용자로서 계약기간 만료자에 대한 조치현황임 • 공무원 재직기관 포함,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과 국제 및 외국기관을 제외한 나머지 산업 • 2017년부터 조사주기가 변경(2010.4월~2013.12월: 매월, 2014년~2016년: 분기, 2017년~: 반기)되었으며, "계약기간 만료자 조치 현황"의 '근속기간 전체 및 1년 6개월 미만'은 2014.1분기 기준 조사부터 조사항목에 포함 • 2015년부터 기간제근로자의 근속기간을 관련 법령과 일치시키기 위해 구분기준 변경(변경 전후: 1년 6개월 미만→1년 6개월 이하, 1년6개월 이상~2년 미만→1년 6개월 초과~2년 미만, 2년 이상→2년 초과)

제 2 장 통계품질진단 결과

제 1 절 통계작성절차별 진단결과

1. 통계작성 기획 진단결과

사업체기간제근로자현황조사에 대한 통계작성기획 진단결과 법적근거, 조사 방법, 조사 및 공표주기, 조사일정 및 일정별 수행 업무 등이 명확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통계작성 기본계획서 등 통계작성과정에 관한 문서화 작업도 충실히 이행되고 있는 것으로 진단되었으나, 업무편람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조사 연혁의 경우 최초 개발 시기, 개발 배경이 명확하며, 통계 작성목적도 명확하게 제시되고 있는 것으로 진단되었다.

하지만, 본 조사통계의 경우 고용노동부 정책부서 담당자와 같은 내부 이용자 활용에 초점을 두고 있어 대외적 이용자 관리 및 이용자 유형별 용도 파악 등의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시사점

본 통계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가 높은 전문적 이용자 관점에서는 애초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 목적이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확대였지만 실제적인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추이는 법률 제정 목적과 괴리가 존재하고 있어 본 조사의 정체성과 활용성이 약화되고 있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 내부 이용자 활용에 초점을 두는 단순한 형태의 조사 정보만으로는 본 통계의 핵심적 정체성인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관한 다각적이고 심층적 정보제공에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사업체 기간제근로자 정규직 전환 관련한 통계 정보 생산 목적과 필요성, 고용노동시장 환경 변화를 고려한 본 조사통계의

장기적 발전 전략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본 조사통계의 정체성 강화 및 개선 방향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진단되었다.

본 조사통계의 경우 연령, 성별, 학력 등과 같은 인적 속성 정보 제공과 고용노동부의 타 유사 관련 통계와의 연계활용에 제약이 있고, 차별적 정체성을 부각시킬 수 있는 통계보고서 및 보도자료 제공 등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본 조사통계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이용자 의견이 확인된 만큼, 고용노동부에서 작성하고 있는 다양한 노동시장 관련 조사들에 대한 전반적 개선방안을 검토하여 본 조사통계의 향후 발전 전략 방향에 관해 다각적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예를 들어 고용노동부의 핵심적 조사의 하나로서 사업체노동력조사를 두고 해당 조사의 하위 혹은 부가조사 형태로 기간제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이슈와 관련된 다각적 조사항목을 구성하여, 통계의 존재감과 차별성, 정체성을 강화할 수 있는 전략적 방향에 대한 논의를 시행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표 2> 통계작성 기획 진단결과

필수진단항목 (품질차원)	진단결과	
	진단점수/ 배점점수	5점척도점수
1. 법적근거 ~ 5. 통계작성 문서화 (관련성)		5/5
1. 법적근거	1/1	
2. 조사방법	1/1	
3. 조사 및 공표주기	1/1	
4. 조사일정 및 일정별 수행업무 제시	3/3	
5-1. 통계작성 기본계획서 첨부	1/1	
5-2. 업무편람(직무편람) 첨부	0/1	
6. 통계연혁 (관련성)		5/5
6-1. 작성통계의 최초개발 시기	2/2	
6-2. 작성통계의 개발 배경	2/2	
6-3. 통계의 개념, 분류, 설계, 과정, 내용, 방법, 표본, 기준년, 가중치 등의 변경 또는 개편이력 관리	3/3	
7. 통계의 작성목적 (관련성)		5/5
7-1. 통계작성 목적의 명확성	1/1	
7-2. 주된 활용분야에 대한 명시	3/3	
7-3. 국내 또는 해외 관련 통계, 유사 사례 사전 검토	2/2	
8. 주요 이용자 및 용도 ~ 9. 이용자 의견수렴 (관련성)		3/5
8-1. 주요 이용자 관리	0/1	
8-2. 주요 이용자 유형별 용도 파악	0/2	
9-1. 실시 내용과 주요 결과 기록	2/2	
9-2. 요구사항 및 요구 반영 결과	3/3	
정성평가		-0.2

※ 5점척도점수는 진단 지표에 대한 항목 점수

※ '해당없음'이 포함된 경우 5점척도점수의 구간기준이 변동될 수 있음

* 1.법적근거~5.통계작성문서화: 7점 이상(5), 6점(4), 3~5점(3), 2점(2), 1점 이하(1)

* 6.통계연혁: 6점 이상(5), 5점(4), 3~4점(3), 2점(2), 1점 이하(1)

* 7.통계의작성목적: 5점 이상(5), 4점(4), 3점(3), 2점(2), 1점 이하(1)

* 8.주요이용자및용도~9.이용자의견수렴: 7점 이상(5), 6점(4), 3~5점(3), 2점(2), 1점 이하(1)

* 정성평가: -0.5점 ~ +0.5점

2. 통계설계 진단결과

사업체기간제근로자현황조사의 통계설계 진단결과 조사 설계와 관련한 내용들이 매우 상세하면서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조사항목 체계에 대한 내용은 일목요연하게 제시되어 있어 조사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으며, 모집단에 대한 정의, 표본 추출, 표본설계 및 관리와 관련하여 실제 어떤 작업들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었는지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제시되어 있고 아울러 해당 내용도 적절한 수준에서 시행된 것으로 진단되었다. 조사표 설계, 변경 절차와 방법, 조사표 변경 이력, 변경승인 일자 등도 명확하게 제시되고 있어 통계 관련성 제고에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조사표 수록 사항 중에서 조사목적, 법적근거, 문의사항 연락처 3가지 항목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이에 대한 수정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진단되었다. 아울러 조사표 변경이력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근거서류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시사점

본 조사는 사업체기간제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율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국가승인 통계라는 점에서 공표되는 통계정보는 우리나라 고용노동시장 현황 파악을 위한 핵심적인 통계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용자 요구사항 반영실태 조사를 통해 진단한 바로는 본 조사의 핵심적 정체성인 기간제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율에 관한 다각적 이해를 위한 핵심적 인적 속성 문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이용자 관점의 활용성과 유용성이 제한되는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현재 조사표 상에서는 정규직 전환율을 성별, 연령, 학력과 연관시켜 분석할 수 있는 핵심 인적 속성에 관한 조사항목이 누락되어 있어 정규직 전환율에 관한 입체적이고 유용성 있는 정보 제공에 한계점이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본 조사의 핵심적 정보인 기간제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율과 관련하여 정규직 전환 이유,

정규직 비전환 이유 등의 추가적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본 통계의 핵심적인 정체성과 이용자 측면의 활용성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진단되었다. 이러한 조사항목 개선 필요성이 확인되어 정성평가에서 감점을 부여하였다.

<표 3> 통계설계 진단결과

필수진단항목 (품질차원)	진단결과	
	진단점수/ 배점점수	5점척도점수
1. 조사 항목 ~ 2. 적용 분류체계 (비교성)		5/5
1-1. 주요 용어 및 항목별 명확한 정의의 적절성	2/2	
1-2. 주요 용어의 정의나 개념 등에 대한 국내 또는 국제기준 비교	2/2	
1-3. 조사표 첨부	1/1	
1-4. 조사항목의 체계	2/2	
2-1. 통계에서 사용하는 분류체계 개요 및 내용의 적절성	2/2	
2-2. 국내 또는 국제기준의 표준분류체계 사용 여부 또는 미사용 사유	2/2	
3. 조사표 구성 (정확성)		4/5
3-1. 조사표 구성 관련 내·외부 전문가 회의 개최	1/1	
3-2. 조사표 구성 내·외부 전문가 회의 결과 반영 여부	3/3	
3-3. 첨부된 조사표에 수록된 사항의 수	3/5	
4. 조사표 설계 및 변경 절차 ~ 5. 조사표 변경이력 (관련성)		3/5
4-1. 조사표 설계, 변경 절차나 방법의 적절성	1/3	
5-1. 조사표 변경 이력 관리	2/2	
5-2. 조사표 변경 이유 기록·관리	0/1	
5-3. 변경승인일자 기록·관리	2/2	
6. 목표모집단과 조사모집단 (정확성)		5/5
6-1. 목표모집단 정의	2/2	
6-2. 조사모집단 정의	2/2	
6-3. 목표모집단 및 조사모집단 차이의 적절성	2/2	
7. 표본추출틀 (정확성)		5/5
7-1. 표본추출틀로 사용되는 자료의 출처(통계명, 작성 기관, 작성연도)	1/1	
7-2. 표본추출틀로 선정한 이유	1/1	
7-3. 표본추출틀의 구축(갱신) 과정, 내용, 주기 등 제시	2/2	
7-4. 모집단 변동에 따른 표본추출틀 주기적 개편 시 개편의 주기, 필요성, 방법 및 절차, 결과 등 제시	1/2	
8. 표본설계 방법 및 결과(표본조사) ~ 9. 표본관리 (정확성)		5/5
8-1. 표본추출방법의 적절성	2/2	
8-2. 표본크기 결정의 타당성	2/2	
8-3. 표본추출 결과의 타당성	2/2	
8-4. 표본설계보고서 첨부	1/1	
8-5. 표본설계보고서에 모수 및 분산 추정방법	1/1	
9-1. 동일대상을 연속 조사 하는 경우 조사대상의 생멸, 전입, 전출 등 표본 내 변동이 발생한 경우, 수정·보완하는 방법	해당없음	

필수진단항목 (품질차원)	진단결과	
	진단점수/ 배점점수	5점척도점수
추가진단항목	추가점수 (진단점수/배점점수)	
1-5. 주요 항목의 조사목적	0.1/0.1	
1-6. 부정확한 응답 가능성이 있는 조사항목 검토	0.1/0.1	
3-4. 조사방법을 혼합하여 이용하는 경우 조사방법별로 조사표의 구성, 내용, 특징 및 설계 시 고려한 다양한 요소 검토	0/0.1	
5-4. 응답자 유형별 응답 소요시간 등 검토	0.1/0.1	
6-4. 조사모집단의 과대표함, 과소포함 등 포함오차에 대한 분석 또는 검토	0/0.1	
7-5. 분류별, 지역별 기타 하위모집단별 추출단위 분포, 관련 통계량, 상관관계 등 기록 및 관리	0/0.1	
7-6. 표본틀에 한계가 있는 경우 그 내용과 보완 등의 검토 또는 조치 결과	0/0.1	
정성평가	-0.3	

- * 1.조사항목~2.적용분류체계: 10점 이상(5), 8~9점(4), 4~7점(3), 2~3점(2), 1점 이하(1)
- * 3.조사표구성: 8점 이상(5), 6~7점(4), 4~5점(3), 2~3점(2), 1점 이하(1)
- * 4.조사표설계및변경절차~5.조사표변경이력: 7점 이상(5), 6점(4), 3~5점(3), 2점(2), 1점 이하(1)
- * 6.목표모집단과조사모집단: 5점 이상(5), 4점(4), 3점(3), 2점(2), 1점 이하(1)
- * 7.표본추출틀(표본조사): 5점 이상(5), 4점(4), 3점(3), 2점(2), 1점 이하(1)
- * 8.표본설계방법및결과~9.표본관리: 10점 이상(5), 8~9점(4), 4~7점(3), 2~3점(2), 1점 이하(1)
- * 정성평가: -1점~+1점

3. 자료수집 진단결과

사업체기간제근로자현황조사의 자료수집과 관련한 전반적인 과정은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조사원 채용, 조사 준비, 현장조사 관리체계 등 조사준비 및 현장관리 등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진단되어 자료수집 과정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보완이 필요한 사항으로서는 조사방법 선택에 관한 구체적인 근거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시사점

본 조사는 사업체 인력관리책임자를 대상으로 기간제근로자 고용 현황 등 민감한 정보를 수집해야 하는 조사라는 점에서 응답자의 정확하고 성실한 응답 협조를 이끌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자료수집 체계 점검 결과 소규모 사업체의 경우 본 조사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 고용 현황 등 응답하기 꺼려지거나 어려운 항목들에 대해 응답을 거부하거나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응답을 거부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소규모 사업체를 대상으로 성실한 응답과 원활한 조사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조사 협조 공문 발송 등의 기본적인 방안 이외에 본 조사를 통해 응답 사업체 책임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유용한 핵심적 정보를 요약하여 조사 시 면접원을 통해 안내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조사 응답자들에게 본 조사를 통해 얻어진 통계정보가 사업체 근로자 관련 고용 정책에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성실하게 응답한 사업체에게 어떠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긍정적 측면의 편익정보를 요약하여 제공해줌으로써 본 조사의 필요성을 인식하도록 하고,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모색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본 사업체기간제근로자현황조사는 기간제근로자 관련하여 어려운 법률적 용어, 고용 현황 등 민감한 사항에 대한 조사항목을 포함하고 있어 응답자들의 응답 협조에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여 비교적 조사 난이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본 조사는 기간제근로자 관련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필요하고, 조사과정에서 다양한 주요 질의 및 대처 필요사항이 발생될 수 있다는 점에서 현황조사 관리와 관련하여 주요 질의에 대해 응답한 내용이나 오류에 대한 사례, 돌발 상황에의 대처방안 등에 대해 사업체기간제근로자현황조사 현장조사 사례집을 발간하여 조사원들 간에 공유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유용할 것으로 생각된다.

<표 4> 자료수집 진단결과

필 수 진 단 항 목 (품질차원)	진단결과	
	진단점수/ 배점점수	5점척도점수
1. 조사방법 (정확성)		4/5
1-1. 조사방법 선택에 대한 검토(조사비용, 조사인력, 조사기간, 조사체계 등)	1/2	
1-2. 선택한 조사방법에 대한 조사과정의 적절성	3/3	
2. 조사원 채용 및 처우 ~ 4. 조사원 업무량 (정확성)		5/5
2-1. 조사원 채용 방법 및 과정의 적절성	2/2	
2-2. 조사원 자격요건, 지위, 급여수준, 지급방법, 부가혜택 등의 적절성	1/2	
3-1. 조사원 교육훈련에 대한 일정	2/2	
3-2. 조사원 교육훈련 내용의 적절성	2/2	
3-3. 교육시간의 적정성 검토	1/1	
3-4. 교육훈련 교재 첨부	1/1	
3-5. 조사기간 중 교체된 조사원에 대한 교육 실시	2/2	
3-6. 조사원 대상 비밀보호 의무 교육 또는 서약서 작성	1/1	
4-1. 조사원 업무량 배정시 고려사항	2/2	
5. 조사업무 흐름도 ~ 6. 조사준비 및 준비조사 (정확성)		5/5
5-1. 조사실시에 대한 조사업무 흐름도 관리의 적절성	2/2	
6-1. 조사 홍보 실시 내용과 방법	1/1	
6-2. 응답자(조사대상) 사전 통지	1/1	
6-3. 조사구 확인 또는 조사명부 보완	2/2	
7. 조사항목별 조사 방법 (정확성)		5/5
7-1. 주요 조사항목별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의 적절성	3/3	
7-2. 조사표 기입에 필요한 조사지침서 첨부	1/1	

필수진단항목 (품질차원)	진단결과	
	진단점수/ 배점점수	5점척도점수
8. 현장조사 관리 (정확성)		5/5
8-1. 현장조사 관리 체계	1/1	
8-2. 현장조사 관리 방법	2/2	
8-3. 현장조사 관리자 1인당 조사원수 등 관리	1/1	
8-4. 현장조사 관리자 역할의 적절성	2/2	
8-5. 현장조사 파라미터 기록·관리 여부	1/1	
8-6. 조사기간 중 작성기관이 조사위탁기관이나 조사원을 대상으로 실시지도(지도점검) 실시	1/1	
9. 조사 질의응답 체계 (정확성)		5/5
9-1. 현장조사 질의 및 응답 체계 운영 방법의 적절성	3/3	
9-2. 주요 질의 응답·오류사례 축적 및 관리	2/2	
9-3. 현장조사 사례집 첨부	0/1	
10. 조사(또는 응답)대상 ~ 12. 표본대체 (정확성)		5/5
10-1. 적격 조사(또는 응답)대상의 지위, 지정 이유의 타당성	2/2	
11-1. 항목 무응답 대처 방법	해당없음	
11-2. 단위 무응답 대처 방법	2/2	
12-1. 표본대체 허용 기준	2/2	
12-2. 표본대체 절차 및 방법	2/2	
12-3. 표본대체 기준, 절차 및 방법의 적절성	1/1	
13. 사후조사 (정확성)		해당없음
13-1. 조사 실시 후 사후조사(모니터링) 실시(시기, 내용, 방법, 비율)	해당없음	
13-2. 사후조사(모니터링) 수행 결과 분석 및 사후 조치 방안(결과, 활용)	해당없음	
14. 행정자료 활용 목적 및 내용 ~ 15. 활용 행정자료 특성 및 입수체계 (관련성)		해당없음
14-1. 행정자료 활용에 대한 목적, 필요성, 활용 정도 파악	해당없음	
14-2. 행정자료 이용 시 발생하는 이용제한 사항 및 사유 파악	해당없음	
14-3. 활용하는 행정자료의 내용 및 항목 파악	해당없음	
15-1. 활용하는 행정자료의 원래 수집 목적에 대한 파악 (관리/제공기관 기준)	해당없음	
15-2. 활용하는 행정자료의 원래 수집과정 및 내용, 관리 기관에 대한 파악(관리/제공기관 기준)	해당없음	
15-3. 행정자료 입수 방법 및 경로의 기록·관리(통계작성기관 기준)	해당없음	
15-4. 행정자료 입수주기 또는 갱신주기 및 정시성에 대한 기록·관리(통계작성기관 기준)	해당없음	
15-5. 행정자료 활용 법적근거(통계작성기관 기준)	해당없음	
추가진단항목	추가점수 (진단점수/배점점수)	

필수진단항목 (품질차원)	진단결과	
	진단점수/ 배점점수	5점척도점수
1-3. 조사의 효율성, 정확성 등의 제고를 위하여 조사방법별 응답비율, 응답자 특성, 추정치에 미치는 영향 등 분석·검토	0/0.1	
2-3. 우수 조사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적용한 방법이나 조치	0/0.1	
3-7. 조사원의 업무지식 숙지 정도에 대한 평가 및 평가 조치(재교육 실시 등)	0/0.1	
10-2. 기억응답과 관련된 검토 여부(조사대상 기간(또는 시점)과 조사시기 사이의 간격, 응답에 필요한 기록물(영수증, 장부 등) 활용가능성 등)	0/0.1	
정성평가	0	

- * 1. 조사방법: 5점(5), 4점(4), 2~3점(3), 1점(2), 0점(1)
- * 2. 조사원채용및처우~4. 조사원업무량: 14점 이상(5), 11~13점(4), 5~10점(3), 2~4점(2), 1점 이하(1)
- * 5. 조사업무흐름도~6. 조사준비및준비조사: 5점 이상(5), 4점(4), 3점(3), 2점(2), 1점 이하(1)
- * 7. 조사항목별조사방법: 4점(5), 3점(4), 2점(3), 1점(2), 0점(1)
- * 8. 현장조사관리: 7점 이상(5), 6점(4), 3~5점(3), 2점(2), 1점 이하(1)
- * 9. 조사질의응답체계: 5점 이상(5), 4점(4), 3점(3), 2점(2), 1점 이하(1)
- * 10. 조사대상~12. 표본대체: 10점 이상(5), 8~9점(4), 4~7점(3), 2~3점(2), 1점 이하(1)
- * 13. 사후조사: 4점(5), 3점(4), 2점(3), 1점(2), 0점(1)
- * 14. 행정자료활용목적및내용~15. 활용행정자료특성및입수체계: 12점 이상(5), 9~11점(4), 5~8점(3), 2~4(2), 1점 이하(1)
- * 정성평가: -1점 ~+1점

4. 통계처리 및 분석 진단결과

통계처리 및 분석 진단결과 주요항목에 대한 분산, 표준오차 추정 방법에 대한 설명은 잘 제시되고 있으나 통계처리 및 분석과 관련하여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 주요항목에 대한 상대표준오차 제공 및 주요 하위그룹별 (성별, 연령별, 지역별, 산업별 등) 무응답 사유별 무응답률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시사점

사업체기간제근로자현황조사는 기간제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율에 관한 유일한 국가승인통계로서 기간제근로자 현황에 관한 기초·기준자료로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에서 작성하고 있는 고용관련 타 조사통계 자료와의 연결과 비교 분석을 통하여 다양한 관점의 고용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데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이용자 요구사항 반영실태 점검 결과 고용노동부에서 작성하고 있는 사업체노동력조사,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등 관련 조사통계 및 나이스 기업 정보 등과의 연계성을 통해 직종·기업 등 특성별로 정규직 전환 추이에 관한 심층 분석 정보 제공에 대한 이용자 니즈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타 통계와의 연결변수 도입을 적극 검토해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표 5> 통계처리 및 분석 진단결과

필수진단항목 (품질차원)	진단결과	
	진단점수/ 배점점수	5점척도점수
1. 자료코딩 ~ 2. 자료입력 (정확성)		5/5
1-1. 자료 코드체계 및 코딩(부호화) 방법의 적절성	1/2	
2-1. 조사결과 자료의 전산입력 방법의 적절성	2/2	
2-2. 입력 시 오류 검출을 위해 적용한 방법의 적절성	2/2	
2-3. 입력매뉴얼(지침서) 첨부	1/1	
2-4. 자료 입력 교육 실시 여부와 교육 일정 및 방법	1/1	
3. 자료내검 (정확성)		5/5
3-1. 조사현장 내검 내용 및 방법, 오류자료 처리방법의 적절성	2/2	
3-2. 입력결과 내검 내용 및 방법, 오류자료 처리방법의 적절성	2/2	
3-3. 전산내검 범위, 논리내검 적용대상 및 적용내용의 타당성	3/3	
3-4. 내검매뉴얼(지침서) 첨부	1/1	
4. 주요 항목무응답 실태 ~ 6. 단위무응답 실태 (정확성)		4/5
4-1. 주요 항목에 대하여 최초 항목 무응답률 수치 제시	해당없음	
4-2. 주요 항목에 대하여 항목 무응답률 산출 산식	해당없음	
5-1. 주요 항목의 항목무응답을 대체하는 경우 대체방법의 적절성	해당없음	
6-1. 최초 단위무응답률 수치 제시	2/2	
6-2. 단위무응답률 산출 산식	1/1	
6-3. 주요 하위그룹별(성별, 연령별, 지역별, 산업별 등) 및 무응답 사유(불응, 접촉불가, 부적격 등)별 무응답률 검토	0/1	
7. 가중치 조정 ~ 8. 통계추정 산식 및 내용 (정확성)		5/5
7-1. 설계가중치 산출	1/1	
7-2. 무응답 가중치 조정	1/1	
7-3. 사후가중치 조정	1/1	
7-4. 설계가중치 구체적인 산출과정 및 방법의 적절성	2/2	
7-5. 무응답 가중치 구체적인 조정과정 및 방법의 적절성	2/2	
7-6. 사후가중치 구체적인 조정과정 및 방법의 적절성	2/2	
8-1. 추정하고자 하는 주요 모수	1/1	
8-2. 추정치를 계산하는 산식의 적절성	2/2	
9. 표본오차 추정 방법 및 결과(표본조사) (정확성)		4/5
9-1. 주요 항목에 대한 분산, 표준오차 등의 추정 방법	2/2	
9-2. 주요 항목에 대한 상대표준오차, 신뢰구간 등의 적절성	1/3	
9-3. 주요 항목의 오차 특성과 이용 시 고려사항	1/1	
10. 지수 유형 및 산출산식 ~ 11. 지수 가중치 및 갱신 (정확성)		해당없음
10-1. 사용된 지수의 유형 및 지수의 장단점, 선정 이유의 타당성	해당없음	
10-2. 사용된 지수의 산출 산식	해당없음	
10-3. 지수작성 목적으로 조사대상 선정기준, 절차, 선정된 항목	해당없음	
11-1. 지수작성 가중치 산출에 이용된 자료의 명칭 및 개요	해당없음	
11-2. 가중치 산출 산식 및 과정, 갱신주기 및 이유	해당없음	
12. 지수개편 ~ 13. 디스플레이터 (정확성)		해당없음
12-1. 지수개편의 주기	해당없음	
12-2. 지수개편의 목적 및 필요성, 방법, 절차, 내용의 적절성	해당없음	

필수진단항목 (품질차원)		진단결과	
		진단점수/ 배점점수	5점척도점수
	12-3. 과거자료 접속방법	해당없음	
	13-1. 디플레이터의 개요, 특성, 적정성	해당없음	
	13-2. 디플레이터의 불변화 방법	해당없음	
14. 계절조정 (비교성)			해당없음
	14-1. 계절조정의 의미와 필요성, 방법 및 버전	해당없음	
	14-2. 계절조정 과정, 과정보정 적용 방법, 내용, 산출물 등 관리	해당없음	
	14-3. 계절조정 시계열 보정의 주기, 이유, 보정의 내용, 방법	해당없음	
15. 행정자료의 매칭방법 (정확성)			해당없음
	15-1. 조사통계자료와 행정자료 간 매칭변수	해당없음	
	15-2. 조사통계자료와 행정자료 간 매칭방법	해당없음	
	15-3. 조사통계자료와 행정자료 간 매칭허용 한계 검토	해당없음	
	15-4. 조사통계자료와 행정자료 간 매칭비율 수치 파악	해당없음	
추가진단항목		추가점수 (진단점수/배점점수)	
3-5. 자료 내용검토(에디팅) 시스템 구축		0.1/0.1	
3-6. 확인된 오류의 유형, 내용, 원인 등에 대한 분석		0.1/0.1	
3-7. 이상치를 처리하는 경우, 이상치의 기준, 식별 및 처리 방법, 처리결과 등 기록·관리		0.1/0.1	
4-3. 항목특성별, 응답자 유형별 등 항목무응답 분포와 특징, 편향 발생 및 분산 증가 가능성 등 분석		0/0.1	
5-2. 항목 무응답 대체시 대체비율, 대체값의 추정치 기여도, 대체값의 자료 표기 방법 등 분석		0/0.1	
6-4. 단위무응답에 의한 편향 발생 및 분산 증가 가능성 검토		0/0.1	
6-5. 항목 또는 단위무응답 발생 시, 응답자와 무응답자의 성향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편향을 줄이기 위한 조치		0/0.1	
6-6. 측정 또는 처리오차에 대한 추정 또는 연구 사례 유무		0/0.1	
9-4. 마이크로데이터 이용자가 스스로 표본오차를 계산할 수 있도록 관련 방법을 제공하는 경우 이에 대한 사용방법		0/0.1	
15-5. 활용하는 행정자료를 점검 또는 보완하는 경우 내용, 방법, 결과 등의 기록·관리		0/0.1	
정성평가		0.0	

- * 1.자료코딩~2.자료입력: 7점 이상(5), 6점(4), 3~5점(3), 2점(2), 1점 이하(1)
- * 3.자료내검: 7점 이상(5), 6점(4), 3~5점(3), 2점(2), 1점 이하(1)
- * 4.주요항목무응답실태~6단위무응답실태: 8점 이상(5), 6~7점(4), 4~5점(3), 2~3점(2), 1점 이하(1)
- * 7.가중치조정~8.통계추정산식및내용: 11점 이상(5), 8~10점(4), 5~7점(3), 2~4점(2), 1점 이하(1)
- * 9.표집오차추정방법및결과: 5점 이상(5), 4점(4), 3점(3), 2점(2), 1점 이하(1)
- * 10.지수유형및산출산식~11.지수가중치및갱신: 12점 이상(5), 9~11점(4), 5~8점(3), 2~4점(2), 1점 이하(1)
- * 12.지수개편~13.디플레이터: 7점 이상(5), 6점(4), 3~5점(3), 2점(2), 1점 이하(1)
- * 14.계절조정: 8점 이상(5), 6~7점(4), 4~5점(3), 2~3점(2), 1점 이하(1)
- * 15.행정자료의매칭방법: 6점 이상(5), 5점(4), 3~4점(3), 2점(2), 1점 이하(1)
- * 정성평가: -1점~+1점

5. 통계공표, 관리 및 이용자서비스 진단결과

사업체기간제근로자현황조사에 대한 공표 일정의 정시성 및 자료수집·처리·보관 과정의 비밀보호 부문은 양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통계공표방법의 다양화 모색이 필요하고, KOSIS 설명자료 이외에 간행물 혹은 작성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통계설명자료를 제공하여 이용자들의 이해를 돕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현재 마이크로데이터는 제공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통계 활용성 제고를 위해 통계청 MDIS를 통한 마이크로데이터 서비스 제공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시사점

이용자 요구사항 반영실태 점검 결과, 사업체기간제근로자현황조사 보도자료의 경우 핵심적 통계 추이 관련한 요약 설명, 그래프, 상세한 부연 설명, 시사점 등 일반적인 보도자료가 포함하고 있는 콘텐츠가 제공되지 않고, 조사결과를 나타내는 단순한 통계표 형태로만 제공되고 있어 국가승인통계로서의 보도자료로 보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가승인통계 보도자료를 통해 핵심적인 통계 정보 추이, 주요 시사점 등이 확인될 수 있어야 하는데, 본 조사통계 보도자료에는 통계표 형식만 제공되고 있어 이용자 관점에서는 실질적으로는 보도자료가 제공되지 않고 있는 것과 다름없다는 인식을 지닐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아울러 현재 사업체기간제근로자현황조사의 경우 통계표 형식의 보도자료만 제공되고 있고, 통계보고서가 제공되지 않고 있다. 사업체노동력조사,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기업체노동비용조사,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등 고용노동부에서 작성하고 있는 타 통계의 경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통계보고서가 제공되고 있는데 비해, 본 사업체기간제근로자현황조사의 경우 통계보고서가 제공되지 않고 있어 이용자 관점의 통계 활용성이 제한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용자

관점에서는 본 조사통계가 기간제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추이를 볼 수 있는 국가승인통계라는 점에서 본 조사 통계에 관한 조사 개요, 주요 핵심 통계정보 추이, 정책적 시사점 등에 관한 설명자료가 포함된 통계보고서를 이용자에게 제공해 줄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마이크로데이터를 DB화해서 제공하게 되면 다양한 분석이 가능하여 본 통계 활용성을 제고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는 점에서 본 조사의 마이크로데이터 제공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FGI 결과 본 통계 이용자들이 본 조사의 가장 기본적인 기초자료조차도 마이크로데이터 형태로 제공되지 않아 통계자료의 활용성과 가치가 현저히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 본 조사 통계 관련한 데이터 신청과 승인 과정이 번거롭고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현재의 통계 정보 접근성 수준으로는 이용자들의 실질적 통계 정보 활용 니즈를 충족시키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편리한 방식으로 마이크로데이터가 제공될 수 있도록 검토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과 같이 보도자료 개선과 통계보고서 제공 필요성이 확인되어 정성평가에서 감점을 부여하였다.

<표 6> 통계공표, 관리 및 이용자서비스 진단결과

필 수 진단 항목 (품질차원)	진단결과	
	진단점수/ 배점점수	5점척도점수
1. 공표통계 해석방법 (관련성)		5/5
1-1. 주요 분류 수준별 세분화된 공표통계의 적절성	1/2	
1-2. 통계 공표의 적정성 검토	3/3	
1-3. 주요 통계표, 그래프	2/2	
1-4. 공표되는 통계의 해석방법 및 이용 시 유의사항	2/2	
1-5. 연도별(시계열) 통계결과 및 분석결과 관리	2/2	
2. 공표통계 일치성 (정확성)		5/5
2-1. 공표된 통계표 형식, 단위표기, 주석 등의 적절성	3/3	
2-2. 공표된 통계수치의 일치성	3/3	
3. 조사대상 기간/조사 기준시점과 공표 시기 (시의성)		5/5
3-1. 조사대상 기간/조사 기준시점과 통계 공표 시점 제시	1/1	
3-2. 조사과정별 소요되는 기간의 적절성	2/2	
3-3. 조사기준 시점과 통계결과의 최초 공표일 간의 차이	5/5	

필수진단항목 (품질차원)	진단결과	
	진단점수/ 배점점수	5점척도점수
4. 공표일정 (정시성)		5/5
4-1. 사전에 공개된 통계공표 일정과 공개방법	1/2	
4-2. 통계공표 일정을 작성기관 홈페이지 등에 예고	2/2	
4-3. 예고된 통계 공표일정 준수	5/5	
5. 통계 작성방법의 비교성 ~ 7. 국가 간 비교성 (비교성)		5/5
5-1. 통계의 개념 동일 여부	1/1	
5-2. 분류체계 동일 여부	1/1	
5-3. 조사 기준시점 동일 여부	1/1	
5-4. 조사 실시 시기 동일 여부	1/1	
5-5. 변경된 경우, 변경 전·후 비교분석 결과	2/2	
6-1. 시계열 단절이 발생한 경우, 발생 원인과 변경된 자료 이용 시 고려사항 검토	2/2	
7-1. 작성통계와 동일한 조사목적에 갖는 외국 통계 명칭과 개요	해당없음	
7-2. 작성통계와 동일한 조사목적에 갖는 외국통계와 직접 비교 가능한지 여부, 가능하지 않은 사유 및 이용 시 고려사항 등에 대한 검토	1/1	
7-3. 통계자료를 국제기구에 제공하는 경우, 국제기구명, 제공항목 등 제시	해당없음	
8. 동일영역 통계와 일관성 ~ 10. 잠정치와 확정치의 일관성 (일관성)		5/5
8-1. 작성통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작성목적/대상/항목을 가진 통계의 명칭과 개요	3/3	
8-2. 동일영역 통계 간 작성목적/대상/항목 및 통계수치의 유사·차이점 및 이유, 이용 시 고려사항에 대한 검토	1/2	
9-1. (작성주기가 다른 경우) 작성통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작성목적/대상/항목을 가진 통계의 명칭과 개요	해당없음	
9-2. (작성주기가 다른 경우) 동일영역 통계 간 작성목적/대상/항목 및 통계수치의 유사·차이점 및 이유, 이용 시 고려사항에 대한 검토	해당없음	
10-1. 두 수치가 차이가 나는 요인 및 이용 시 고려사항 검토	2/2	
11. 통계의 이용자 서비스 (접근성)		3/5
11-1. 통계공표 방법의 다양화	1/3	
11-2. 국가통계포털(KOSIS) 수록	2/2	
12. 통계설명자료 제공 (명확성)		4/5
12-1. 통계설명자료(메타정보, 방법론 보고서, 품질보고서 등에 대한 소재 정보)	2/2	
12-2. 국가통계포털(KOSIS) 통계설명자료 제공(통계개요)	3/3	
12-3. 국가통계포털(KOSIS) 통계설명자료 제공(조사관리)	3/3	
12-4. 국가통계포털(KOSIS) 통계설명자료 제공(표본설계/표본조사, 통계추정·추계 및 분석)	3/3	
12-5. 국가통계포털(KOSIS) 통계설명자료 제공(지수편제)	해당없음	
12-6. 국가통계포털(KOSIS) 통계설명자료 제공(참고자료)	2/3	
12-7. 간행물 또는 작성기관 홈페이지 등에 통계설명자료 제공(KOSIS 설명자료 외)	0/3	
13. 마이크로데이터 생성·관리 (정확성)		5/5
13-1. 마이크로데이터 생성 방법	2/2	

필수진단항목 (품질차원)		진단결과	
		진단점수/ 배점점수	5점척도점수
	13-2 마이크로데이터 관리 방법	2/2	
14.	마이크로데이터 서비스 (접근성)		1/5
	14-1. 마이크로데이터 제공	0/2	
	14-2. 마이크로데이터에 대한 설명자료 제공 여부	해당없음	
	14-3. 마이크로데이터 미제공 사유	1/3	
	14-4. 마이크로데이터 제공/미제공 관련 내부 규정(지침)	0/1	
15.	마이크로데이터 일치율 (정확성)		10/10
	15-1. 마이크로데이터 점검용 자료 제출	10/10	
	15-2. 마이크로데이터 일치율 점검 결과	0/-5	
16.	자료 수집, 처리 및 보관 과정의 비밀보호 ~ 18. 자료 보안 및 접근제한 (관련성)		5/5
	16-1. 자료 수집과정에서 응답자 비밀보호를 위한 지침(법령, 규정)이나 조치	2/2	
	16-2. 자료 처리과정(입력, 전송, 처리)에서 응답자 비밀보호를 위한 지침(법령, 규정)이나 조치	2/2	
	16-3. 자료 보관과정에서 응답자 비밀보호를 위한 지침(법령, 규정)이나 조치	2/2	
	17-1. 공표자료에서 응답자 비밀보호를 위하여 취한 조치나 방법	2/2	
	17-2. 마이크로데이터 제공 과정에서 응답자 비밀보호를 위하여 취한 조치나 방법	해당없음	
	18-1. 자료 유실, 유출, 훼손 등 예방하기 위한 자료보안 관련 지침(법령, 규정)이나 조치	2/2	
추가진단항목		추가점수 (진단점수/배점점수)	
1-6.	성인지와 관련하여 공표하는 관련 통계 항목 등	0/0.1	
3-4.	기간 단축 가능성 검토	0/0.1	
7-4.	주요 통계내용을 국가 간 비교하여 통계표, 그래프 등으로 제시	0/0.1	
10-2.	잠정치와 확정치 차이를 줄이기 위한 연구 또는 검토	0/0.1	
10-3.	통계 자료 공표 후 오류가 발견되어 수정한 경우, 내용, 사유, 조치과정, 결과 등 기록·관리	0/0.1	
11-3.	통계서비스 경로별 이용자 접속횟수나 마이크로데이터 제공실적 등에 대한 모니터링 및 분석 결과	0/0.1	
14-5.	이용자 맞춤형 통계산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요구방법, 소요시간 및 비용 등 명시	0/0.1	
정성평가		-0.3	

- * 1.공표통계및해석방법: 10점 이상(5), 8~9점(4), 4~7점(3), 2~3점(2), 1점 이하(1)
- * 2.공표통계일치성: 5점 이상(5), 4점(4), 3점(3), 2점(2), 1점 이하(1)
- * 3.조사대상기간/조사기준시점과공표시기: 7점 이상(5), 6점(4), 3~5점(3), 2점(2), 1점 이하(1)
- * 4.공표일정: 8점 이상(5), 6~7점(4), 4~5점(3), 2~3점(2), 1점 이하(1)
- * 5.통계작성방법의비교성~7.국가간비교성: 10점 이상(5), 8~9점(4), 4~7점(3), 2~3점(2), 1점 이하(1)
- * 8.동일영역통계와일관성~10.잠정치와확정치와의일관성: 11점 이상(5), 8~10점(4), 5~7점(3), 2~4점(2), 1점 이하(1)
- * 11.통계의이용자서비스: 5점(5), 4점(4), 2~3점(3), 1점(2), 0점(1)
- * 12.통계설명자료제공: 18점 이상(5), 14~17점(4), 7~13점(3), 3~6점(2), 2점 이하(1)
- * 13.마이크로데이터생성·관리: 4점(5), 3점(4), 2점(3), 1점(1), 0점(1)
- * 14.마이크로데이터서비스: 5점 이상(5), 4점(4), 3점(3), 2점(2), 1점 이하(1)
- * 15.마이크로데이터일치율: 실제 측정점수 반영(0~10점)
- * 16.자료수집·처리·및·보관·과정의·비밀·보호~18.자료보안및접근제한: 11점 이상(5), 8~10점(4), 5~7점(3), 2~4점(2), 1점 이하(1)
- * 정성평가: -1점 ~ +1점

6. 통계기반 및 개선 진단결과

사업체기간제근로자현황조사에 대한 통계기반 및 개선 부문에 대한 진단결과는 양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조사 통계는 작성기관인 고용노동부 소속기관 지방고용노동청의 통계조사관이 자료수집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고용노동부 담당 공무원이 통계조사 결과를 작성·보도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아울러 조사항목 재검토, 사후조사 도입 등 이전 정기품질진단 개선과제에 대한 이행 사항이 확인되었다. 하지만 통계업무 담당 인력별로 통계 업무 담당 관련 전공 등에 관한 상세한 설명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진단되었다.

<표 7> 통계기반 및 개선 진단결과

필 수 진단 항목 (품질차원)	진단결과	
	진단점수/ 배점점수	5점척도점수
1. 기획 및 분석 인력, 사업예산 (정확성)		4/5
1-1. 통계업무 담당 부서명, 업무별 담당인력 구성 및 통계업무 담당년수, 업무 관련 전공 여부 등의 기술	1/2	
1-2. 외부 위탁 또는 용역사업으로 통계 생산하는 경우, 수탁 기관의 관련 업무 인력구성 및 통계담당년수 등의 적절성	해당없음	
1-3. 최근 1년간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통계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내역(교육구분, 과정명, 교육기관, 참여인원수)	1/1	
2. 통계위탁 조사 (정확성)		해당없음
2-1. 통계작성을 민간 위탁하여 작성하는 경우, 제안요청서, 제안서, 사업계획서 등 통계조사 민간위탁지침 반영	해당없음	
2-2. 조사기획서(사업계획서)	해당없음	
2-3. (표본조사의 경우)표본설계서 및 예비표본을 포함한 명부 일체	해당없음	
2-4. (전수조사의 경우) 모집단 명부 일체	해당없음	
2-5. 조사원 교육관련 사항(지침서, 사례집, 현장조사 수행지침 등)	해당없음	
2-6. 조사표 원본(또는 폐기 등에 관한 계획)	해당없음	
2-7. 조사결과 원자료(마이크로데이터) 파일, 파일설계서	해당없음	
2-8. 에디팅(내용검토) 요령서	해당없음	
2-9. 현장조사 평가보고서(현장조사 진행상황, 응답률 현황, 표본교체 현황, 조사과정상 문제점, 특이사항, 대응방안 등)	해당없음	
2-10. 자료처리 보고서(자료집계 및 분석 시 사용한 통계기법, 명령문, 변수에 대한 설명, 오류 유형별 원인 및 처리결과, 무응답에 대한 대체방법, 주요 항목의 정확성 지표 등)	해당없음	
2-11. 최종보고서(통계표 및 분석결과)	해당없음	

필수진단항목 (품질차원)	진단결과	
	진단점수/ 배점점수	5점척도점수
3. 통계 품질관리 및 개선 (관련성)		
3-1. 통계품질제고 가능성에 대한 검토 결과나 개선 계획 또는 추진실적에 대한 기록·관리	2/2	5/5
3-2. 최근 3년간 통계에 대한 학계, 언론, 국회 등 외부 지적 사례 내용, 관련 해명, 개선 등의 조치사항	해당없음	
3-3. 과거 정기(수시)통계품질진단 결과에 따른 개선 과제 관리 및 이행내역(중점관리과제)	1/1	
추가진단항목	추가점수 (진단점수/배점점수)	
1-4. 전체 및 주요항목, 활동별 사업예산 내역을 산출근거와 함께 제시 또는 예산 증액 필요성, 절감 가능성 등에 대한 분석·검토	0/0.1	
정성평가	0	

* 1. 기획및분석인력,사업예산: 4점(5), 3점(4), 2점(3), 1점(2), 0점(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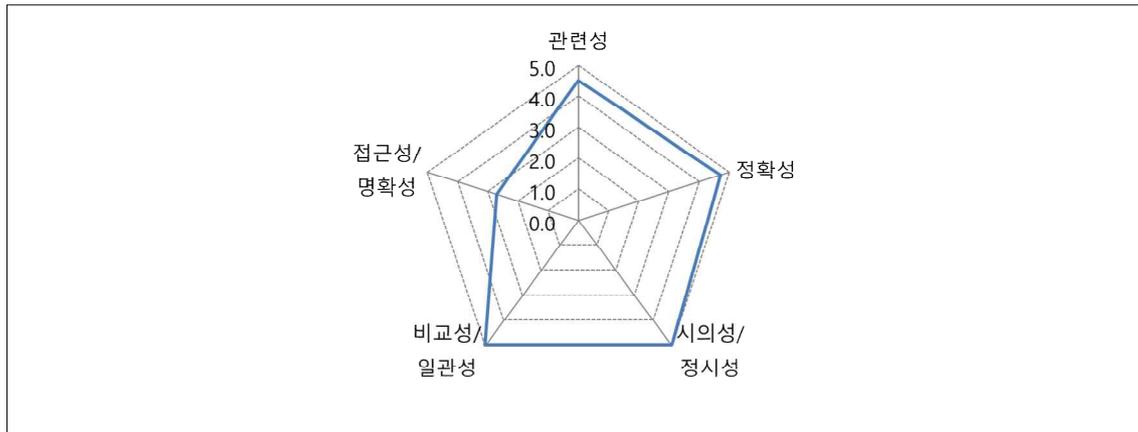
* 2. 통계위탁조사: 10점 이상(5), 8~9점(4), 4~7점(3), 2~3점(2), 1점 이하(1)

* 3. 통계 품질관리및개선: 4점(5), 3점(4), 2점(3), 1점(2), 0점(1)

* 정성평가: -0.5점 ~ +0.5점

제 2 절 품질차원별 진단결과

통계작성절차별 진단을 토대로 사업체기간제근로자현황조사의 품질차원별 점수를 도출한 결과, 관련성 척도 4.5점, 정확성 척도 4.7점, 시의성/정시성 척도 5.0점, 비교성/일관성 척도 5.0점, 접근성/명확성 척도 2.7점으로 진단되었다.



<그림 2> 『사업체기간제근로자현황조사』 품질차원별 진단점수(방사형그래프)

1. 관련성

관련성이란 이용자 관점에 초점을 둔 측면으로 통계의 포괄범위와 개념, 내용 등이 이용자 요구에 부합되는 정도를 의미한다. 즉, 통계이용자에게 얼마나 의미 있고 유용한 통계를 작성하여 제공하고 있는가와 관련된 개념이다. 본 통계의 경우 관련성 척도는 4.5점으로 진단되었다. 본 통계의 경우 법적근거, 조사방법, 조사 및 공표주기, 조사일정 및 일정별 수행 업무 등이 명확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통계작성 기본계획서 등 통계작성과정에 관한 문서화 작업도 충실히 이행되고 있는 것으로 진단되었으나, 업무편람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조사 연혁의 경우 최초 개발 시기, 개발 배경이 명확하며, 통계 작성목적도 명확하게 제시되고 있는 것으로 진단되었다. 아울러 본 조사통계의 경우 고용노동부 정책부서 담당자와 같은 내부 이용자 활용에 초점을 두고 있어 대외적 이용자 관리 및 이용자 유형별 용도 파악 등의 관리가 필요하며, 조사표 변경이력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근거서류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FGI를 통해 확인된 바로는 고용노동부 내부 이용자 활용에 초점을 두는 단순한 형태의 조사 정보만으로는 본 통계의 핵심적 정체성인 ‘기간제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관한 다각적이고 심층적 정보제공에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사업체기간제근로자 정규직 전환 관련한 통계 정보 생산 목적과 필요성, 고용노동시장 환경 변화를 고려한 본 조사통계의 장기적 발전 전략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본 조사통계의 정체성 강화 및 개선 방향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진단되었다. 본 조사통계의 경우 연령, 성별, 학력 등과 같은 인적 속성 정보 제공과 고용노동부의 타 유사 관련 통계와의 연계활용에 제약이 있고, 차별적 정체성을 부각시킬 수 있는 통계보고서 및 보도자료 제공 등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본 조사통계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이용자의견이 확인된 만큼, 고용노동부에서 작성하고 있는 다양한 노동시장 관련 조사들에 대한 전반적 개선방안을 검토하여 본 조사통계의 향후 발전 전략 방향에 관해 전문적 이용자 그룹에 의한 다양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2. 정확성

정확성이란 측정하고자 하는 모집단의 특성을 추정함에 있어 이 추정된 값이 미지의 참값에 얼마나 근접하는가의 정도를 의미한다. 정확성 척도는 4.7점으로 진단되었다.

사업체기간제근로자현황조사의 자료수집과 관련한 전반적인 과정은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조사원 채용, 조사 준비, 현장조사 관리체계 등 조사준비 및 현장관리 등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진단되어 자료수집 과정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보완이 필요한 사항으로서는 조사방법 선택에 관한 구체적인 근거 보완, 현황조사 관리와 관련하여 주요 질의에 대해 응답한 내용이나 오류에 대한 사례, 돌발 상황에의 대처방안 등에 대해 사업체기간제근로자현황조사 현장조사 사례집을 발간하여 조사원들 간에

공유할 수 있는 체계 구축, 주요항목에 대한 상대표준오차 제공 및 주요 하위그룹별(성별, 연령별, 지역별, 산업별 등) 무응답 사유별 무응답률 관리, 조사표 수록 사항 중에서 누락된 조사목적, 법적근거, 문의사항 연락처 3가지 항목에 대한 수정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3. 시의성/정시성

시의성은 작성기준시점과 결과공표시점간의 차이를 나타내는 통계의 현실 반영도와 관련된 개념이며, 정시성은 공표한 날짜와 사전에 계획된 공표 날짜 사이의 시간 지체 정도를 나타내며, 예고된 공표시기를 정확히 준수하는가에 대한 개념이다. 본 사업체기간제근로자현황조사의 시의성과 정시성은 5.0점 수준으로 양호한 수준으로 진단되었다.

4. 비교성/일관성

비교성은 시간 흐름과 영역에 따라 비교되는 정도를 의미한다. 즉, 시간이나 공간이 달라도 통계자료가 공통된 기준(통계개념, 측정도구, 측정과정 및 기초자료)을 기준으로 집계되어 서로 비교 가능한지를 진단하는 차원이다. 일관성이란 동일한 경제·사회현상에 대해 서로 다른 기초자료나 작성방법, 작성주기(공표주기)에 의해 작성된 통계자료들이 서로 얼마나 유사성을 지니는가에 대한 정도를 의미한다. 따라서 서로 다른 기초자료나 작성방법에 의해 작성되었더라도 동일한 현상을 반영하는 통계자료들은 서로 유사한 결과를 보여야 한다. 사업체기간제 근로자현황조사에 대한 품질진단 결과 비교성/일관성 차원은 5.0점으로 양호한 것으로 진단되었다. 주요 용어의 정의, 개념에 대한 국내 혹은 국제기준 비교, 조사 항목 체계, 통계에서 사용하는 분류 체계, 작성 통계와 유사한 작성 목적/대상/항목을 지닌 통계 명칭 및 개요 설명 등이 잘 제시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5. 접근성/명확성

접근성은 이용자가 통계자료에 대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하며, 명확성은 통계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정보제공 수준을 말한다. 사업체기간제근로자현황조사의 접근성/명확성 척도는 2.7점으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진단되었다.

본 조사 통계의 경우 보도자료 배포 이외 통계공표 방법의 다양화 모색이 필요하고, KOSIS 설명자료 이외에 간행물 혹은 작성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통계설명자료를 제공하여 이용자들의 이해를 돕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현재 마이크로데이터는 제공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통계 활용성 제고를 위해 통계청 MDIS를 통한 마이크로데이터 서비스 제공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용자 요구사항 반영실태 진단 결과, 사업체기간제근로자현황조사 보도자료의 경우 핵심적 통계 추이 관련한 요약 설명, 그래프, 상세한 부연 설명, 시사점 등 일반적인 보도자료가 포함하고 있는 콘텐츠가 제공되지 않고, 조사결과를 나타내는 단순한 통계표 형태로만 제공되고 있어 국가승인통계로서의 보도자료로 보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아울러 현재 사업체기간제근로자현황조사의 경우 통계표 형식의 보도자료만 제공되고 있고, 통계보고서가 제공되지 않고 있다. 사업체노동력조사,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기업체노동비용조사,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등 고용노동부에서 작성하고 있는 타 통계의 경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통계보고서가 제공되고 있는데 비해, 본 사업체기간제근로자현황조사의 경우 통계보고서가 제공되지 않고 있어 이용자 관점의 통계 활용성이 제한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용자 관점에서는 본 조사통계가 기간제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추이를 볼 수 있는 국가승인통계라는 점에서 본 조사 통계에 관한 조사 개요, 주요 핵심 통계정보 추이, 정책적 시사점 등에 관한 설명자료가 포함된 통계보고서를 이용자에게 제공해 줄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마이크로데이터를 DB화해서 제공하게 되면 다양한 분석이 가능하여 본 통계 활용성을 제고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는 점에서 본 조사의 마이크로데이터 제공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FGI 결과 본 통계 이용자들이 본 조사의 가장 기본적인 기초자료조차도 마이크로데이터 형태로 제공되지 않아 통계자료의 활용성과 가치가 현저히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 본 조사 통계 관련한 데이터 신청과 승인 과정이 번거롭고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현재의 통계 정보 접근성 수준으로는 이용자들의 실질적 통계 정보 활용 니즈를 충족시키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편리한 방식으로 마이크로데이터가 제공될 수 있도록 검토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된다.

제 3 절 진단결과 종합표

『사업체기간제근로자현황조사』 통계정보보고서를 기반으로 6개 통계작성절차별 품질 지표들을 진단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5개 품질차원별 진단 결과도 함께 도출하였다. 최종 진단결과 종합 점수는 다음과 같다.

<표 8> 진단결과 종합표

작성 절차 품질 차원	1. 통계작성 기획	2. 통계설계	3. 자료수집	4. 통계처리 및 분석	5. 통계공표 관리 및 이용자서비스	6. 통계기반 및 개선	평점 (5점척도)
관련성	4.5	3.0	-		5.0	5.0	4.5
정확성		4.8	4.9	4.6	5.0	4.0	4.7
시의성/ 정시성					5.0		5.0
비교성/ 일관성		5.0		-	5.0		5.0
접근성/ 명확성					2.7		2.7
평점 (5점척도)	4.5	4.5	4.9	4.6	4.4	4.5	4.5
가중치 적용	7.2	14.6	19.8	21.5	22.6	5.1	90.7
추가점수 (정성평가 포함)	-0.2	0.0	0.0	0.3	-0.3	0.0	-0.2
총계	7.0	14.6	19.8	21.8	22.3	5.1	90.5

* 평점은 세부진단항목에 대한 평균으로 작성절차별(또는 품질차원별) 평균과는 차이가 있으며, 가중치 적용 점수는 반올림 표기로 인해 합계수치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제 3 장 개선과제별 개선방안

지금까지 국가통계의 품질 향상 및 신뢰도 제고와 통계 이용자 친화적인 통계생산을 위하여 『사업체기간제근로자현황조사』에 대한 품질진단을 실시하였다. 품질진단은 관련성, 정확성, 시의성/정시성, 비교성/일관성, 접근성/명확성의 5개 차원에 대해 통계정보보고서 활용 점검, 자료수집 체계 점검, 이용자 요구사항 반영실태(FGI) 점검, 공표자료 오류 점검, 조사표 설계 및 유사통계 비교·분석 점검, 표본설계 점검, 마이크로데이터 품질 점검이라는 7가지 절차를 통해 수행하였다. 제3장에서는 각 진단에서 도출한 개별 개선과제에 대해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 1 절 현장조사 사례집 마련을 통한 조사 관리체계 고도화

1. 현황 및 문제점

본 사업체기간제근로자현황조사는 기간제근로자 관련하여 어려운 법률적 용어, 고용 현황 등 민감한 사항에 대한 조사항목을 포함하고 있어 응답자들의 응답 협조에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여 비교적 조사 난이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본 조사는 기간제근로자 관련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필요하고, 조사과정에서 다양한 주요 질의 및 대처 필요사항이 발생될 수 있다는 점에서 현황조사 관리와 관련하여 주요 질의에 대해 응답한 내용이나 오류에 대한 사례, 돌발 상황에의 대처방안 등에 대해 사업체기간제근로자현황조사 사례집을 발간하여 조사원들 간에 공유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유용할 것으로 생각된다. 자료수집체계 점검 결과 FQA를 중심으로 조사문의 사항 대응 방안을 조사원 교육에 활용하고 있으나, 현장조사 과정의 다양한 경험과 오류 사례 등을 축적하여 종합한 현장조사 사례집은 구비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2. 세부 개선과제 내용(실행방법 포함)

실태 조사 시 발생되었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방법으로 주로 이용되는 방법 중 하나가 질의응답 형태의 현장조사 사례집을 만드는 것이다. 조사원이 응답자와의 조사과정에서 응답자가 질문한 내용을 기록하고 그 기록된 응답자의 질문내용에 대한 응대 또는 해결 내용을 상세히 기록하는 것이다. 이러한 기록들을 바탕으로 하여 조사 완료 시점에 별도의 분석을 통해 공통적으로 많이 나온 질문내용들을 선별한 후 주제별로 카테고리를 만들어 사례집을 만들고 조사원들 간에 공유하고 교육에 활용할 수 있다. 이러한 현장조사 사례집 구비를 통해 체계적인 조사원 교육 및 정보 공유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개선 조치를 통해 향후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사업체기간제근로자현황조사에서 반복적인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수 있고 조사원 교육에도 유용하게 활용되어, 표준화된 조사 체계 구축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제 2 절 정확성 평가를 위한 주요항목 상대표준오차 제공

1. 현황 및 문제점

사업체기간제근로자현황조사에 대한 표본설계 진단결과 공표통계에 대한 정확성을 판단할 수 있는 주요항목에 대한 상대표준오차가 제시되고 있지 않아 본 조사통계 이용자들이 공표통계에 대한 정확성과 신뢰성을 평가하기가 어려운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 세부 개선과제 내용(실행방법 포함)

본 사업체기간제근로자현황조사는 기간제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율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국가승인통계로서 활용성과 중요성이 높은 통계라는 점에서 공표되는 주요항목에 대한 상대표준오차를 제공하여 이용자들이 하위급 통계정보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

제 3 절 조사협조 필요성 인식 제고 위한 유용한 정보제공 검토

1. 현황 및 문제점

사업체기간제근로자현황조사의 경우 고용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인력관리책임자를 대상으로 응답을 받게 되는데, 대규모 사업체의 경우 인력관리만을 담당하는 별도 조직이 구성되어 있으나 소규모 사업체의 경우 별도의 인력관리책임자가 없고 사업체 대표가 모두 겸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바쁜 상황에서 본 조사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응답협조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로 인해 2~3회에 걸친 응답 협조 요청 노력과 본 조사의 필요성 설명 등 조사원의 업무 피로도가 가중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세부 개선과제 내용(실행방법 포함)

자료수집 체계 점검 결과 소규모 사업체의 경우 본 조사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 고용 현황 등 응답하기 꺼려지거나 어려운 항목들에 대해 응답을 거부하거나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응답을 거부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소규모 사업체를 대상으로 성실한 응답과 원활한 조사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조사 협조 공문발송 등의 기본적인 방안 이외에 본 조사를 통해 응답 사업체 책임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유용한 핵심적 정보를 요약하여 조사 시 면접원을 통해 안내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조사 응답자들에게 본 조사를 통해 얻어진 통계정보가 사업체 근로자 관련 고용 정책에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성실하게 응답한 사업체에게 어떠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긍정적 측면의 편익정보를 요약하여 제공해줌으로써 본 조사의 필요성을 인식하도록 하고,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모색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제 4 절 개선과제 요약

지금까지 제시한 개선과제를 요약한 내용은 <표 9>와 같다.

<표 9> 개선과제 요약

단계	개선과제	실행방법	기대효과	관련 품질지원	출처	비고 (예상문제점 등)
단기	정확성 평가를 위한 주요항목 상대 표준 오차 제공	- 주요 조사항목에 대한 상대 표준오차 제공	- 통계정보의 정확성과 신뢰성 판단	관련성	표본설계 점검, (4. 통계처리 및 분석)	
중기	현장조사 사례집 마련을 통한 조사 관리체계 고도화	- 조사 완료 시점에 별도의 분석을 통해 공통적으로 많이 나온 질문내용들을 선별한 후 주제별로 카테고리를 만들어 사례집을 만들고 통계조사관들 간에 공유하고 교육에 활용	- 조사관리체계의 표준화와 고도화 제고	정확성	자료수집 체계점검, (3. 자료수집)	
	조사협조 필요성 인식 제고 위한 유용한 정보제공 검토	-본 조사를 통해 응답 사업체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유용한 핵심적 정보를 요약하여 조사 시 면접원을 통해 안내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조사협조 필요성 인식 제고	정확성	자료수집 체계점검, (3. 자료수집)	

※ 단기 : 1년 이내, 중기 : 1~2년, 장기 : 2년 이상

제 4 장 발전전략 및 중장기 로드맵

1. 현황 및 문제점

본 통계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가 높은 전문적 이용자 관점에서는 애초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 목적이 기간제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확대였지만 실제적인 기간제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추이는 법률 제정 목적과 괴리가 존재하고 있고, 핵심적인 정규직 전환율에 관한 심층적 분석 정보 제공이 어려운 조사표로 본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어 본 조사의 정체성과 활용성이 약화되고 있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 내부 이용자 활용에 초점을 두는 단순한 형태의 조사 정보만으로는 본 통계의 핵심적 정체성인 ‘기간제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관한 다각적이고 심층적 정보제공에 한계가 있고, 본 조사 통계의 존재감과 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통계보고서 제공 및 국가승인통계로서 가장 기본적인 사항으로 볼 수 있는 조사 결과의 핵심적 시사점과 설명 자료가 포함된 보도자료 제공 등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업체기간제근로자 정규직 전환 관련한 통계 정보 생산 목적과 필요성, 고용노동시장 환경 변화를 고려한 본 조사 통계의 장기적 발전 전략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본 조사통계의 정체성 강화 및 개선 방향에 대한 전면적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진단되었다.

2. 전략적 제언

사업체기간제근로자현황조사의 차별적 정체성 강화 및 장기적 발전 전략 수립을 위해 고용노동시장 관련 전문적 이용자 그룹의 자문회의체 등을 구성하고 전문가들과의 의견수렴과정을 정례화하여 운영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조사통계의 경우 연령, 성별, 학력 등과 같은 인적 속성 정보 제공과 고용노동부의 타 유사 관련 통계와의 연계활용에 제약이 있고, 차별적

정체성을 부각시킬 수 있는 통계보고서 및 보도자료 제공, 마이크로 데이터 제공 등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본 조사통계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이용자 의견이 확인된 만큼, 앞에서 언급된 문제점을 중심으로 본 조사통계의 향후 발전 전략 방향에 관해 전문적 이용자 그룹에 의한 다양하고 근본적인 논의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된다. 예를 들어 고용노동부의 핵심적 조사의 하나로서 사업체노동력조사를 두고 해당 조사의 하위 혹은 부가조사 형태로 기간제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이슈와 관련된 다각적 조사항목을 구성하여, 통계의 존재감과 차별성, 정체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통계 생산, 통계 공표,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는 충분한 표본 규모 확보, 국가 승인통계로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의미 있는 보도 자료 배포 등 본 통계 개선과 발전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를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조사통계에 관한 품질진단 보고서에서 지적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본 조사통계의 신뢰성 및 활용도 제고에 관한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보고서의 장기발전 로드맵에 제시된 문제점을 중심으로 본 조사통계의 발전방향에 대한 근본적이고 생산적인 검토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된다.

(출처: 차원별-관련성, 통계작성절차별-1.통계작성 기획, FGI)

붙임1

자료수집 체계 점검 결과 (조사통계용)

통 계 명	사업체기간제근로자현황조사
승 인 번 호	118042
작 성 기 관	고용노동부
면 접 일 시	2023년 3월 23일
연 구 원	이태민
연구보조원	-

제1부 **점검계획**

1. 점검 방법

- 점검목적
 - 조사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 요인들을 파악하기 위해 조사기획자, 조사관리자, 조사원을 대상으로 자료수집방법, 현장 점검 및 관리체계 등에 대해서 점검하는데 목적이 있음

- 점검방법
 - 작성기관에서 제출한 통계정보보고서의 내용을 중심으로 하여 자료수집체계에 대한 내용을 점검하고, 작성기관 담당자 면담 시 그 내용 확인

- 점검내용
 - 점검의 내용은 진단매뉴얼에서 제시한 사항을 중심으로 점검
 - 자료수집방법의 적절성 : 조사방법 및 체계 점검, 조사표 관리
 - 현장점검 및 관리체계
 - 조사원 관리
 - 응답자 관리

2. 면담(현장방문) 일정

일시	면담대상자	장소	주요 점검사항
'23.3.23.	고용노동부 000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회의실	- 자료수집방법의 적절성: 조사방법 및 체계 점검, 조사표 관리
	중부지방고용노동청 000		- 현장점검 및 관리체계
	중부지방고용노동청 000		- 조사원 관리 - 응답자 관리

제2부 **점검 결과 요약**

점검 자료목록	문제점	개선의견
조사원 인터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 조사의 작성기관인 고용노동부 명의를 조사협조공문이 일부 조사 대상 사업체의 경우에는 직접적인 감독기관이 아닌 곳으로부터의 협조공문으로 인식되고 있어 대상 사업체로부터 조사 협조를 받아내기 쉽지 않은 문제점이 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작성기관인 고용노동부 및 해당 조사 대상 사업체가 속해있는 지방자치단체 혹은 교육청과 같은 직접적인 감독관청 명의를 합동 조사 협조 공문을 조사 실시 이전에 사전에 전송하여 본 조사가 국가승인통계로서 중요성이 높고, 정확하게 응답해야 할 필요성과 의무가 있는 조사라는 점을 강조하여 면접원의 현장조사 방문 시 본 조사 업무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될 필요성
조사원 인터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규모 사업체의 경우 별도의 인력관리책임자가 없고 사업체 대표가 모두 겸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바쁜 상황에서 본 조사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응답협조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이로 인해 2~3회에 걸친 응답 협조 요청 노력과 본 조사의 필요성 설명 등 조사원의 업무 피로도가 가중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사 응답자들에게 본 조사를 통해 얻어진 통계정보가 사업체 근로자 관련 고용 정책에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성실하게 응답한 사업체에게 어떠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긍정적 측면의 편익정보를 요약하여 제공해줌으로써 본 조사의 필요성을 인식하도록 하고,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모색해볼 필요성
현장조사 사례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장조사 과정의 다양한 경험과 사례 등을 모은 현장조사 사례집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장조사 관리 및 조사 질의응답 체계성 제고를 위해 현장조사 사례집을 마련하여 조사원들 간 공유할 필요성이 있음

제3부 자료수집 체계 점검 결과

1. 점검 개요 및 설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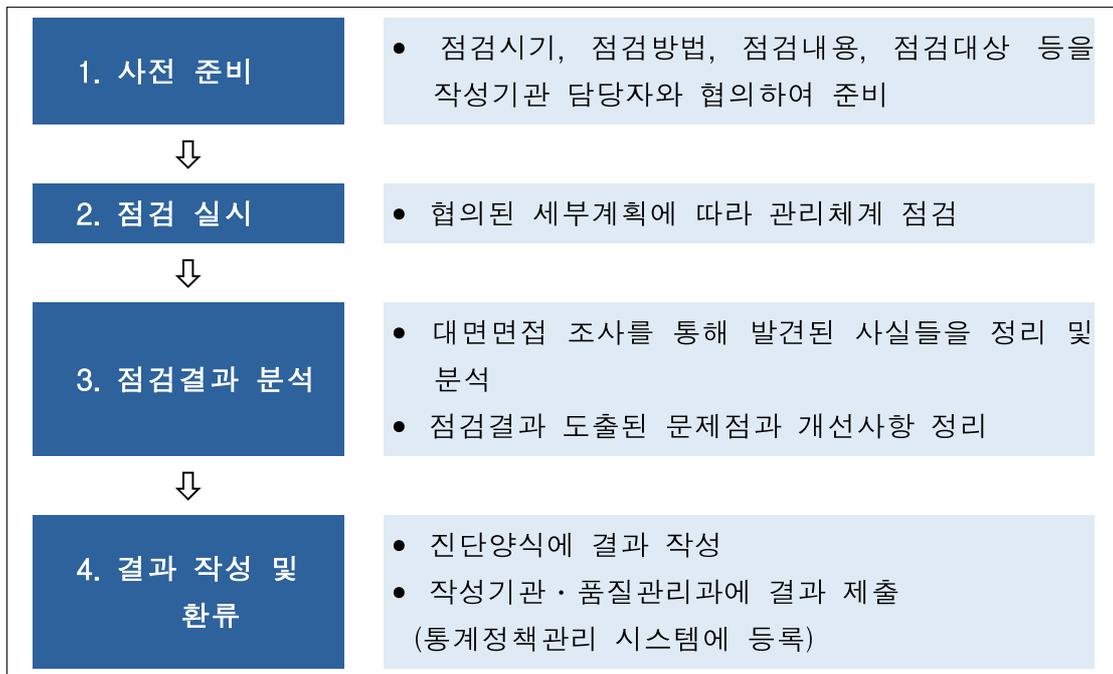
가. 점검 개요

통계자료의 정확성은 수집된 자료가 얼마나 정확한가에 달려 있으며, 이는 자료 수집 시스템의 효율성에 의해 좌우된다고 할 수 있다. 자료가 정확히 수집되었는지, 절차적 오류는 없는지 등에 대한 점검과정은 통계품질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과정이다. 자료수집이 이루어지는 다양한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자료수집 오류 가능성을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자료 수집 체계와 관련된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나. 점검 설계

조사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 요인들을 파악하기 위한 자료수집체계 점검을 위해 통계 작성기관인 고용노동부 조사기획자, 조사 담당기관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조사관리자, 조사관 등 총 3인을 대상으로 자료수집방법의 적절성, 현장점검 및 관리 및 응답자 관리 등에 대해 대면 면접방식을 통해 조사를 실시하였다.

자료수집 체계 점검을 위해서 작성기관에서 제출한 통계정보보고서의 내용과 근거자료 확인을 중심으로 하여 자료수집체계에 대한 점검은 진단매뉴얼에서 제시한 사항을 중심으로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조사방법 및 체계, 조사표 관리 등에 대한 자료수집방법의 적절성, 현장 조사의 점검 및 관리 및 응답자 관리에 대한 사항을 중심으로 점검을 실시하였다. <그림 1>은 자료수집 체계 점검 흐름도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1> 자료수집 체계 점검 흐름도

2. 점검 결과

가. 현황 및 문제점

(1) 현황

이 사업체기간제근로자현황조사의 경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효과 분석 및 기간제근로자에 관한 정책수립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조사원이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체에 직접 방문조사, 전화조사, 우편조사, 팩스·이메일 조사 등 타계식 및 자계식 방법을 병행하여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본 사업체기간제근로자현황조사의 경우 기간제근로자 등 법률적 용어 등 응답자가 어려워 하는 용어에 대해 상세한 설명이 요구되는 조사라는 점에서 본 조사 및 유사조사 수행 경험자를 우선적으로 선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조사와 관련한 상세한 내용을 설명하기 위한 조사원 교육 자료를 마련하고

조사지침서에 의한 체계적인 자료 수집체계를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본 조사 응답률 제고를 위해 사전 홍보를 위한 공문 발송 및 홈페이지를 통한 조사 안내 활동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조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고용노동부 소속기관 지방고용노동청에서는 조사 분야 경력이 풍부한 인력으로 팀을 구성하여 자료수집 업무 충실화와 질적 제고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진단되었으며, 면접 조사원들도 본 조사 및 유사 조사 경력을 지니고 있는 분들을 중심으로 선발하여 조사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조사가 기간제근로자와 관련된 법률 용어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는 중간 정도의 난이도가 요구되는 조사로서 유사 조사 경험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작성기관인 고용노동부 조사기획자, 조사업무 수행 기관인 지방 고용노동청 조사 관리자 및 조사원 등은 조사업무 수행에 있어서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대체로 양호한 조사결과를 산출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본 조사 관련 유사경험이 풍부한 조사원과 관리자를 본 조사에 투입하고 있고, 조사 관련 조사원 교육도 충실하게 이행되고 있음을 고려해 볼 때, 조사 관리체계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조사는 기간제근로자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국가 승인 통계라는 점에서 설문 응답대상자로부터 충실한 응답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조사기관에서는 대면면접조사 방식으로 응답내용을 확인하면서 응답에 오류가 없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응답 답례품으로는 1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하여 응답률 제고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 문제점

① 일부 사업체의 경우 사전 협조 공문 발송 주체 변경 검토 필요성

자료수집 체계 점검과정에서 확인된 본 조사의 가장 큰 애로사항의 하나는 일부 사업체의 경우 해당 사업체를 관할하는 정부기관이 아닌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조사에 협조를 해야 하는 이유를 이해시키는 것이 어려운 것으로 확인되었다. 예를 들어 유치원의 경우 관할 감독청인 교육청 공문이 아니라

고용노동부 공문을 통해 본 조사에의 참여 및 응답을 설득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되고 있다는 것이다. 본 조사의 작성기관인 고용노동부 명의의 조사협조공문이 일부 조사 대상 사업체의 경우에는 직접적인 감독기관이 아닌 곳으로부터의 협조공문으로 인식되고 있어 대상 사업체로부터 조사 협조를 받아내기 쉽지 않은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다는 것이다.

② 조사협조를 위한 응답자 관점의 필요성 인식 제고 필요성

본 조사의 경우 고용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인력관리책임자를 대상으로 응답을 받게 되는데, 대규모 사업체의 경우 인력관리만을 담당하는 별도 조직이 구성되어 있으나 소규모 사업체의 경우 별도의 인력관리책임자가 없고 사업체 대표가 모두 겸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바쁜 상황에서 본 조사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응답협조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로 인해 2~3회에 걸친 응답 협조 요청 노력과 본 조사의 필요성 설명 등 조사원의 업무 피로도가 가중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③ 현장조사 사례집 구비 필요성

본 사업체기간제근로자현황조사는 기간제근로자 관련하여 어려운 법률적 용어, 고용 현황 등 민감한 사항에 대한 조사항목을 포함하고 있어 응답자들의 응답 협조에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여 비교적 조사 난이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본 조사는 기간제근로자 관련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필요하고, 조사과정에서 다양한 주요 질의 및 대처 필요사항이 발생될 수 있다는 점에서 현황조사 관리와 관련하여 주요 질의에 대해 응답한 내용이나 오류에 대한 사례, 돌발 상황에서의 대처방안 등에 대해 사업체기간제근로자현황조사 사례집을 발간하여 조사원들 간에 공유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유용할 것으로 생각된다. 자료수집체계 점검 결과 FQA를 중심으로 조사문의 사항 대응 방안을 조사원 교육에 활용하고 있으나, 현장조사 과정의 다양한 경험과 오류 사례 등을 축적하여 종합한 현장조사 사례집은 구비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나. 주요 개선의견

(1) 원활한 현장조사 수행을 위한 일부 사업체 대상 합동 조사 협조 공문 발송 검토

자료수집 체계 점검과정에서 확인된 본 조사의 애로사항의 하나는 작성기관인 고용노동부 명의의 조사협조공문이 유치원과 같은 일부 사업체의 경우 직접적인 감독관청에서 발송된 공문이 아니라는 이유로 대상 사업체로부터 조사 협조를 받아내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러한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작성기관인 고용노동부 및 해당 조사 대상 사업체가 속해있는 지방자치단체 혹은 교육청과 같은 직접적인 감독관청 명의의 합동 조사 협조 공문을 조사 실시 이전에 사전에 전송하여 본 조사가 국가승인통계로서 중요성이 높고, 정확하게 응답해야 할 필요성과 의무가 있는 조사라는 점을 강조하여 면접원의 현장조사 방문 시 본 조사 업무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될 필요성이 있다.

(2) 응답자 조사협조 필요성 인식 제고를 위한 유용한 정보제공 검토

본 조사는 사업체 인력관리책임자를 대상으로 기간제근로자 고용 현황 등 민감한 정보를 수집해야 하는 조사라는 점에서 응답자의 정확하고 성실한 응답 협조를 이끌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자료수집체계 점검 결과 소규모 사업체의 경우 본 조사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 고용 현황 등 응답하기 꺼려지거나 어려운 항목들에 대해 응답을 거부하거나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응답을 거부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소규모 사업체를 대상으로 성실한 응답과 원활한 조사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조사 협조 공문발송 등의 기본적인 방안 이외에 본 조사를 통해 응답 사업체 책임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유용한 핵심적 정보를 요약하여 조사 시 면접원을 통해 안내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조사 응답자들에게 본 조사를 통해 얻어진 통계정보가 사업체 근로자 관련 고용 정책에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성실하게 응답한 사업체에게 어떠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긍정적 측면의 편익정보를 요약하여 제공해줌으로써 본 조사의 필요성을 인식하도록 하고,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모색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3) 현장조사 사례집 마련을 통한 조사 관리체계 고도화

실태 조사 시 발생되었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방법으로 주로 이용되는 방법 중 하나가 질의응답 형태의 현장조사 사례집을 만드는 것이다. 조사원이 응답자와의 조사과정에서 응답자가 질문한 내용을 기록하고 그 기록된 응답자의 질문내용에 대한 응대 또는 해결 내용을 상세히 기록하는 것이다. 이러한 기록들을 바탕으로 하여 조사 완료 시점에 별도의 분석을 통해 공통적으로 많이 나온 질문내용들을 선별한 후 주제별로 카테고리를 만들어 사례집을 만들고 조사원들 간에 공유하고 교육에 활용할 수 있다. 이러한 현장조사 사례집 구비를 통해 체계적인 조사원 교육 및 정보 공유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개선 조치를 통해 향후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사업체기간제근로자현황조사에서 반복적인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수 있고 조사원 교육에도 유용하게 활용되어, 표준화된 조사 체계 구축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 근거자료 확인 목록

[매뉴얼 III.자료수집] 진단항목	근거자료 목록	확인결과
1. 조사방법	· 조사 응답 비율, 응답자 특성 · 분석결과 자료	· 통계 결과표, 입력시스템 화면 확인
2. 조사원 채용 및 처우	· 채용 과정 및 계획 문서	· 채용 공고문 문서 확인
3. 조사원 교육훈련	· 조사원 교육자료 · 교육 세부일정 및 계획/결과 · 보안 교육 및 서약서 · 조사원 평가 결과 · 재교육 일정 등	· 교육 자료 문서 확인
4. 조사원 업무량	· 응답소요시간, 조사난이도, 조사기간 등 참고자료	· 조사원 업무량 배정 문서 확인
5. 조사업무 흐름도	· 조사업무 흐름도 관리	· 조사지침서 내용 확인
6. 조사준비 및 준비조사	· 홍보 내역 · 응답자 사전 통지서 · 조사구 또는 명부 보완내역	· 조사실시 안내 공문 확인 · 조사구, 명부 보완 화면 확인 · 조사 홍보 홈페이지 공고문 확인
7. 조사항목별 조사방법	· 조사 지침서 · 문항별 응답 요령 · 항목별 내검지침(추가 확인)	· 조사 지침서 확인
8. 현장조사 관리	· 현장조사 관리 지침 · 현장조사 파라데이터 세부자료 (방문 또는 접촉시도 횟수, 방문요일 및 시간대, 조사 성공/실패 등) · 실사지도(지도점검) 결과자료	· 조사 지침서 확인 · 파라데이터 관리 화면 확인 · 실사지도 점검 문서 확인
9. 조사 질의응답 체계	· 현장조사 질의 응답 체계 운영방법 · 주요 질의 응답, 오류사례 · 현장조사 사례집	· 조사 지침서 확인 (현장조사 사례집은 미보유)
10. 조사(또는 응답) 대상	· 기억응답에 활용된 참고자료	· 기억응답 참고자료는 해당 없음
11. 무응답 대처	· 항목, 단위 무응답 대처 지침, 사례	· 무응답 매뉴얼 확인
12. 표본대체	· 표본대체 기준 및 방법 · 표본대체 목록 현황 자료	· 조사 지침서 확인 · 표본대체 목록현황에 관한 입력시스템 화면 확인
13. 사후조사	· 모니터링 실시 계획자료 · 모니터링 대상 명부, 표본선정내역, 질 문지, 검증항목 및 오차범위 등 · 모니터링 결과자료 및 사후 조치 사례	· 2019년 시행한 사후조사 관련 자료 확인
14. 행정자료 활용 목적 및 내용	· 행정자료 활용 기획서 · 행정자료 연계현황	· 해당없음
15. 활용 행정자료의 특성 및 입수체계	· 행정자료활용 기획서 (투입행정자료의 메타데이터) · 행정자료 입수내역 · 행정자료 입수지침(공문확인 등)	· 해당없음

붙임2

이용자 요구사항 반영실태 점검 결과

통 계 명	사업체기간제근로자현황조사
승 인 번 호	118042
작 성 기 관	고용노동부
면 접 일 시	2023년 4월 26일
연 구 원	이태민
연구보조원	-

제1부 회의 준비 및 진행

I. 회의 준비과정

참석자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석자 선정방법 * 사업체기간제근로자현황조사 혹은 유사통계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대상자들을 발굴하여 선정함. * 작성기관인 고용노동부로부터 전달받은 추천자명단 및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고용통계분야 관련 적격대상자명단 작성 후 섭외절차 통해 최종 선정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석자 현황 - 정책고객 (기업경영정책수립자 포함) _____ 명 - 교수 _____ 2_ 명 - 연구원 _____ 3_ 명 - 대학원생 또는 대학생 _____ 명 - 일반인 _____ 명 - 기타() _____ 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시 장소 	토즈모임센터 (양재점, 양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요 시간 	2시간

II. 회의 진행

회의 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에 예비 질문지를 참석자들에게 배포하여 문항들에 대한 의견을 미리 생각하고 참석함. - 예비 질문지를 통해 통계품질의 5차원을 기반으로 조사목적에 맞는 질문지를 구성하고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진행함.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이OO 교수는 서면으로 참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자 : 이태민 ● 기록자 : 이태민 ● 관찰자 : 김진수 ● 녹음 · 녹화 여부 : 녹음

제2부 회 의 록

작성절차별	이용자 요구사항	개선 의견
1. 통계작성 기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계 개선전략 수립을 위한 전문가 의견 수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용노동시장 관련 전문적 이용자 그룹의 자문회의체 등을 구성하고 전문가들과의 의견수렴과정을 정례화 하여 운영 고용노동부에서 작성하고 있는 다양한 노동시장 관련 조사들에 대한 전반적 개선방안을 검토하여 본 조사통계의 향후 발전 전략 방향에 관해 전문적 이용자 그룹에 의한 다양한 논의 필요
2. 통계설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사항목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규직 전환율 조사항목에서 성별, 연령, 학력 등 핵심적 인적 속성 문항 추가 정규직 전환/비전환 이유 항목 추가 근속기간을 좀 더 세분화하여 조사하는 것을 검토
4. 통계처리 및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타 관련 통계와의 연계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타 통계시스템 및 통계DB와의 연결 변수 또는 비교 가능한 변수를 생성 사업체노동력조사, 직종별사업체 노동력조사,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등 관련 조사통계 및 나이스 기업 정보 등과의 연계 활용을 위한 연결변수 도입 검토
5. 통계공표, 관리 및 이용자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계 보도자료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요 정보를 요약하고, 정책적 시사점 등 부연 설명을 포함한 보도자료 제공 통계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링크를 포함하여 제공하는 방안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계보고서 제공 및 설명자료 보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간제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및 통계 개요 등에 대해 상세한 설명 자료를 포함한 통계보고서를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마이크로데이터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편리한 방식으로 마이크로데이터가 제공될 수 있도록 검토

제3부 이용자 요구사항 반영실태 점검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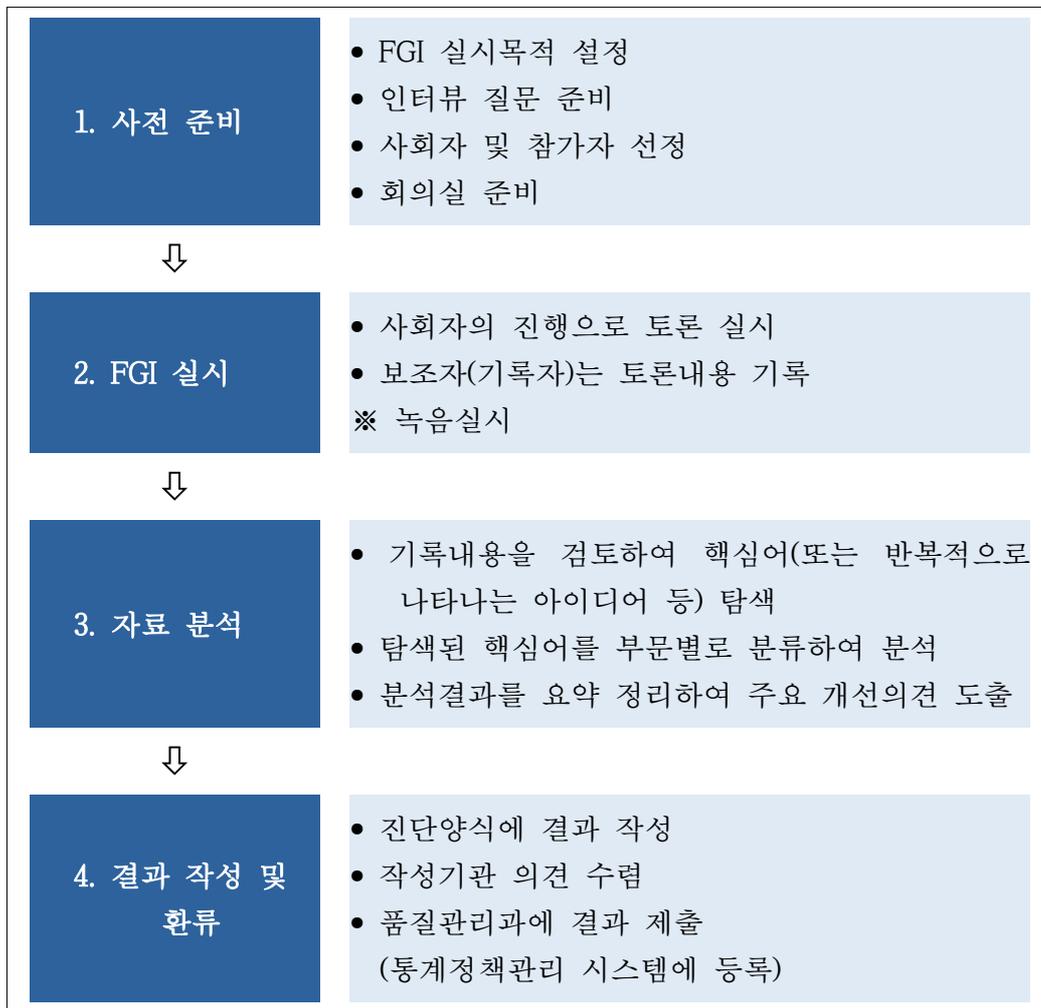
1. 점검 개요 및 설계

가. 점검 개요

통계품질 진단 시 이용자의 다양한 필요성을 충족시키고 만족도를 제고시키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통계 이용자는 통계로부터 기대하는 정보를 충분히 얻기를 원한다. 품질이 우수한 통계는 이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많이 가진 통계이다. 따라서 통계 이용자가 통계자료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는지를 조사하여 품질진단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 통계작성기관은 통계의 전문이용자, 일반이용자를 구분하여 리스트를 확보하고 수시로 이용자가 해당통계를 만족스럽게 이용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는 통계 생산자가 간과하고 있는 통계 이용자들의 요구사항을 통계작성 및 자료제공 과정에 반영하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이 부문 진단은 통계이용자들의 통계자료에 대한 만족도를 확인하고, 요구 및 불만사항을 파악하여 이용자 측면의 품질진단을 확인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수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나. 점검 설계

이용자 요구사항 반영실태 부문의 진단은 이용자 요구사항 반영정도를 측정하는데 이를 위하여 이 통계 관련 이용자 교수 2인, 연구원 3인으로 표적집단을 구성하고 FGI(Focus Group Interview)를 실시하였다. FGI는 소집단을 형성하여 특정 주제에 대해서 계획적이면서도 자유롭게 토론하는 형태를 말한다. 일대일 면접에 비해 정보 획득이 신속하고, 함께 모여 토론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를 힌트로 자신의 생각을 좀 더 확실히 표출하는 시너지 효과가 있어 정성적인 이용자 조사기법으로 많이 활용된다. 주요 항목별로 미리 작성된 예비 질문지를 이메일을 통해 면접대상자에게 송부하였고 회의 시 각 주제별로 자유롭게 토론이 진행되었다.



<그림 2> 표적집단 면접(FGI) 진행 절차

2. 점검 결과

가. 현황 및 이용자 요구사항

(1) 현황

이 사업체기간제근로자현황조사의 경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효과 분석 및 기간제근로자에 관한 정책수립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통계로서 기간제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율을 알 수 있는 국내 유일한 국가승인통계라는 점에서 유용성과 필요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하지만 이 통계에 대한 니즈가 있는 이용자

관점에서 정규직 전환자의 인적 속성 정보 제공·정규직 전환/비전환 이유에 관한 정보 제공 등 조사항목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 국가승인통계 위상에 걸맞는 보도자료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 이용자 친화적 관점에서 통계에 관한 상세한 설명자료 제공이 필요하다는 점, 마이크로 데이터 제공이 필요하다는 점, 타 통계와의 연계성 강화 모색이 필요하다는 점, 통계의 정체성 및 활용성 강화를 위해 고용노동부 작성 통계에 관한 전반적 점검 및 재구조화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 등이 본 조사 통계의 차별적 활용가치를 감소시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 이용자 요구사항

① 조사항목 개선 필요성

본 조사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효과 분석 및 기간제근로자에 관한 정책수립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정책적 목적의 성격이 강한 조사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기간제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율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국가 승인통계라는 점이 본 조사통계의 차별적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기간제근로자 관련한 정책적 목적을 지니고 있는 유일한 국가 승인통계로서의 차별적 정체성을 명확하게 강화하기 위해서는 일부 조사표 항목에 대한 수정보완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확인되었다.

본 조사의 가장 핵심적 통계는 기간제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율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정규직 전환율과 관련하여 이용자 관점에서 정보니즈가 가장 높은 부분은 정규직 전환율을 연령, 성별, 학력 등의 핵심적 인적 속성과 연관시켜 고찰하고자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현재 조사표 상에서는 정규직 전환율을 성별, 연령, 학력과 연관시켜 분석할 수 있는 핵심 인적 속성에 관한 조사항목이 누락되어 있어 정규직 전환율에 관한 입체적이고 유용성있는 정보 제공에 한계점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아울러 본 조사의 핵심적 정보인 기간제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율과 관련하여 정규직 전환 이유, 정규직 비전환 이유 등의 추가적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본 통계의 핵심적인 정체성과 이용자 측면의 활용성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진단되었다.

② 통계 보도자료 개선 필요성

사업체기간제근로자현황조사 보도자료의 경우 핵심적 통계 추이 관련한 요약 설명, 그래프, 상세한 부연 설명, 시사점 등 일반적인 보도자료가 포함하고 있는 콘텐츠가 제공되지 않고, 조사결과를 나타내는 단순한 통계표 형태로만 제공되고 있어 국가승인통계로서의 보도자료로 보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가승인통계 보도자료를 통해 핵심적인 통계 정보 추이, 주요 시사점 등이 확인될 수 있어야 하는데, 본 조사통계 보도자료에는 통계표 형식만 제공되고 있어 이용자 관점에서는 실질적으로는 보도자료가 제공되지 않고 있는 것과 다름없다는 인식을 지닐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③ 통계보고서 제공 및 설명자료 보완 필요성

현재 사업체기간제근로자현황조사의 경우 통계표 형식의 보도자료만 제공되고 있고, 통계보고서가 제공되지 않고 있다. 사업체노동력조사,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기업체노동비용조사,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등 고용노동부에서 작성하고 있는 타 통계의 경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통계보고서가 제공되고 있는데 비해, 본 사업체기간제근로자현황조사의 경우 통계보고서가 제공되지 않고 있어 이용자 관점의 통계 활용성이 제한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용자 관점에서는 본 조사통계가 기간제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추이를 볼 수 있는 국가승인 통계라는 점에서 본 조사통계에 관한 조사 개요, 주요 핵심 통계정보 추이, 정책적 시사점 등에 관한 설명자료가 포함된 통계보고서를 이용자에게 제공해 줄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④ 인터넷 통한 마이크로데이터 제공 필요성

본 조사통계의 활용성을 제약하는 가장 큰 문제점의 하나로 확인된 부분은 이용자들이 본 조사 데이터에 접근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었다. 이용자 관점에서 본 조사통계의 활용성 제고를 위해서는 기간제근로자 현황 및 정규직 전환율을 조사하고 있는 본 조사통계의 마이크로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분석이 필수적인데, 사업체기간제근로자현황조사의 경우 마이크로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지 않고 있고, 필요한 자료 요청과 승인 과정이 번거롭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있어 실질적인 연구 및 유용성 높은 유관 통계 생산 등과 같은 활용성에 제약이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⑤ 통계 활용성 제고 위한 타 관련 통계와의 연계 필요성

사업체기간제근로자현황조사는 기간제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율에 관한 유일한 국가승인통계로서 기간제근로자 현황에 관한 기초·기준자료로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에서 작성하고 있는 고용관련 타 조사통계 자료와의 연결과 비교 분석을 통하여 다양한 관점의 고용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데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아울러 이용자 관점에서도 타 관련 통계와의 연계 활용을 통해 고용시장 관련한 유용한 연구 및 정보 가치 활용성 제고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⑥ 통계 개선전략 수립을 위한 전문가 의견 수렴 활성화 필요성

본 통계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가 높은 전문적 이용자 관점에서는 애초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 목적이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확대였지만 실제적인 기간제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율 추이는 법률 제정 목적과 괴리가 존재하고 있고, 핵심적인 정규직 전환율에 관한 심층적 분석 정보 제공이 어려운 조사표로 본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어 본 조사의 정체성과 활용성이 약화되고 있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 내부

이용자 활용에 초점을 두는 단순한 형태의 조사 정보만으로는 본 통계의 핵심적 정체성인 ‘기간제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관한 다각적이고 심층적 정보제공에 한계가 있고, 본 조사 통계의 존재감과 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통계보고서 및 보도자료 제공 등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업체기간제근로자 정규직 전환 관련한 통계 정보 생산 목적과 필요성, 고용노동시장 환경 변화를 고려한 본 조사통계의 장기적 발전 전략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본 조사통계의 정체성 강화 및 개선 방향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진단되었다.

나. 주요 개선의견

(1) 조사항목 개선

조사항목 개선을 위한 유관기관 간 기초 논의, 관련 전문가 회의 등을 통해 본 조사의 핵심 정보인 기간제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율과 관련한 정책적 시사점 제공 및 이용자 활용성 제고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조사항목으로의 수정·보완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정규직 전환율과 관련하여 성별, 연령, 학력은 기간제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율 분석에서 가장 핵심적인 인적 속성 정보라는 점에서 정규직 전환율 조사항목에서 해당 핵심적 인적 속성에 관한 문항을 추가하여 조사를 시행하는 것이 정책적 시사점 도출 및 이용자 활용성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정규직 전환과 관련한 조사항목의 경우에는 현재의 정규직 전환비율을 묻는 항목 이외에 정규직 전환 이유, 정규직 비전환 이유 등 정규직 전환과 관련한 이유 항목을 추가함으로써 기간제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촉진요인과 정규직 전환 장애요인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보완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본 조사통계의 핵심적 정체성으로 볼 수 있는 기간제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율과 관련하여 입체적인 정보 제공과 정책적 시사점 강화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청년층의 경우 비정규직으로 입직해서 타 코호트에 비해 근속기간 3개월을 넘기지 않고 퇴직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근속기간을 좀 더 세분화하여 조사하는 것을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2) 통계 보도자료 개선

국가승인통계인 사업체기간제근로자현황조사 결과를 통해 이용자들에게 제공해주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정보는 기간제근로자 중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비율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고, 핵심적 인적 속성에 따라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정규직 전환/비전환 이유는 무엇인지 등에 관한 것인데, 현재 보도자료에는 이와 같은 관심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조사표 집계결과를 통계표형식으로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 국가승인통계 활용성과 신뢰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보도자료에서는 주요 정보를 요약하고, 정책적 시사점 등 부연 설명을 포함시킬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사업체기간제근로자현황조사 통계자료에의 접근성 개선을 위해, 향후 보도자료에 해당 통계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링크를 포함하여 제공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3) 상세한 설명자료 포함된 통계보고서 제공

현재 사업체기간제근로자현황조사 이용자 관점에서 기간제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중심으로 한 본 조사통계 개요, 주요 핵심통계 추이, 정책적 시사점 등에 대한 설명자료가 포함된 통계보고서 부재로 인해 통계 이용에 애로점이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만큼, 기간제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및 통계 개요 등에 대해 상세한 설명 자료를 포함한 통계보고서를 제공하여 통계 이용자들이 본 통계에 대한 이해 및 활용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4) 인터넷 통한 마이크로데이터 제공 검토

마이크로데이터를 DB화해서 제공하게 되면 다양한 분석이 가능하여 본 통계 활용성을 제고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는 점에서 본 조사의 마이크로데이터 제공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FGI 결과 본 통계 이용자들이 본 조사의 가장 기본적인 기초자료조차도 마이크로데이터 형태로 제공되지 않아 통계자료의 활용성과 가치가 현저히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 본 조사 통계 관련한 데이터 신청과 승인 과정이 번거롭고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현재의 통계 정보 접근성 수준으로는 이용자들의 실질적 통계 정보 활용 니즈를 충족시키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편리한 방식으로 마이크로데이터가 제공될 수 있도록 검토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된다.

(5) 통계 활용도 제고 위한 타 통계와의 연결변수 도입 검토

본 조사 결과는 기간제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통계자료의 기준이 되므로 다른 조사와 연결 및 비교를 통하여 통계 활용을 극대화 시킬 수 있다. 따라서 타 통계시스템 및 통계DB와의 연결 변수 또는 비교 가능한 변수를 생성할 필요가 있다.

고용노동부에서 작성하고 있는 사업체노동력조사,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등 관련 조사통계 및 나이스 기업 정보 등과의 연계성을 통해 직종·기업 등 특성별로 정규직 전환 추이에 관한 심층 분석 정보 제공이 가능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 통계와의 연결변수 도입을 적극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6) 통계 개선전략 수립을 위한 전문가 의견 수렴 활성화

사업체기간제근로자현황조사의 차별적 정체성 강화 및 장기적 발전 전략 수립을 위해 고용노동시장 관련 전문적 이용자 그룹의 자문회의체 등을 구성하고 전문가들과의 의견수렴과정을 정례화 하여 운영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조사통계의 경우 연령, 성별, 학력 등과 같은 인적 속성 정보 제공과 고용노동부의 타 유사 관련 통계와의 연계활용에 제약이 있고, 차별적 정체성을 부각시킬 수 있는 통계보고서 및 보도자료 제공 등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본 조사통계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이용자 의견이 확인된 만큼, 고용노동부에서 작성하고 있는 다양한 노동시장 관련 조사들에 대한 전반적 개선방안을 검토하여 본 조사통계의 향후 발전 전략 방향에 관해 전문적 이용자 그룹에 의한 다양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예를 들어 고용노동부의 핵심적 조사의 하나로서 사업체노동력조사를 두고 해당 조사의 하위 혹은 부가조사 형태로 기간제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이슈와 관련된 다각적 조사항목을 구성하여, 통계의 존재감과 차별성, 정체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통계 생산, 통계 공표, 의미 있는 보도 자료 배포 등 본 통계 개선과 발전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를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붙임3

공표자료 오류 점검 결과

통 계 명	사업체기간제근로자현황조사
승 인 번 호	118042
작 성 기 관	고용노동부
연 구 원	이태민
연구보조원	-

제1부 점검 결과 요약

1. KOSIS 통계표 점검

- 기준자료명: 2022년 사업체기간제근로자현황조사 결과표
- 점검자료명: 2022년 사업체기간제근로자현황조사 KOSIS 데이터
- 작성기준년도: 2022년

통계표명	점검결과	개선의견	반영여부
산업별 계약기간 만료자 조치현황 (2017년:산업분류 9차 /2018년~:산업분류 10차)	주석오류	주석수정	반영
규모별 계약기간 만료자 조치현황	통계표명 오류 주석오류	통계표명수정 주석수정	반영
근속기간별 계약기간 만료자 조치현황	주석오류	주석수정	반영

<정량평가 연계 항목> - V. 통계공표, 관리 및 이용자서비스

'2-1. 공표된 통계표 형식, 단위표기, 주석 등의 적절성': 미반영 시 0~1점으로 진단

'2-2. 공표된 통계수치의 일치성': 미반영 시 0점으로 진단

제2부 공표자료 오류 점검 결과

1. 점검 개요

「통계정보보고서」의 공표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 국가통계포털(KOSIS) 공표자료 유무와 국제기구에 자료를 제공하는지 파악한다. 진단대상 통계의 기준자료(점검 시점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발간된 보도자료, 통계보고서 등의 통계간행물 또는 통계표 입력 시 사용한 원본보고서)를 지정하고, KOSIS 통계표와 국제기구 자료를 대상으로 아래의 사항들을 점검한다.

(1) 통계표 형식 및 내용 점검

기준자료와 KOSIS 통계표의 형식 및 내용, 용어, 단위, 주석, 출처, 항목명 등을 점검한다.

(2) 통계표 수치자료 점검

기준자료와 KOSIS 통계표에 수록된 내용을 비교하여 수치를 점검한다. 단순오류나 오타뿐만 아니라 과거 시계열, 다른 통계표 등과 비교하여 논리적 타당성을 점검한다.

(3) 국제기구 제공자료 점검

OECD, ILO, UN 등 국제기구에 통계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국제기구 요구자료 및 제공현황을 파악하고, 국제기구에 제출한 자료와 국제기구의 간행물이나 DB 등에 서비스되는 자료의 일치 여부를 비교하고 그 원인을 파악한다.

2. 점검 결과

(1) 통계표 형식 및 내용 점검

점검과정에서 [산업별 계약기간 만료자 조치현황 (2017년:산업분류 9차 /2018년~:산업분류 10차)], [근속기간별 계약기간 만료자 조치현황] 통계표명에서는 주석오류가 확인되었고, [규모별 계약기간 만료자 조치현황] 통계표명에서는 통계표명오류 및 주석오류가 확인되었으나, 최종적으로 KOSIS 상에서 제공되고 있는 데이터에서는 상기의 주석 및 통계표명 오류가 모두 수정되어 제공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 통계표 수치자료 점검

2022년 기준 사업체기간제근로자현황조사 결과표와 사업체기간제근로자현황조사 KOSIS 데이터에 대한 통계표 수치자료 점검 결과 오류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3) 국제기구 자료 제공 일치 여부 점검

사업체기간제근로자현황조사는 국제기구에 통계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하여, 점검에서 제외하였다.

붙임4

조사표 설계 및 유사통계 비교분석 점검

통 계 명	사업체기간제근로자현황조사
승 인 번 호	118042
작 성 기 관	고용노동부
연 구 원	오유진
연구보조원	설민지

제1부 점검 개요

I. 점검 개요

- 조사표 설계 및 유사통계 비교·분석 점검 시 검토한 자료
 - 통계정보보고서
 - 조사표
 - 조사요령서
 - 통계자료(KOSIS, 보고서)
 - FGI 이용자 의견

II. 조사 개요

통 계 명	사업체기간제근로자현황조사	
작 성 기 관 명	고용노동부	
작 성 주 기	반기	
점검기준년도	2022년 2/2	
전수/표본조사	전 수 ()	표 본 (●)
조 사 목 적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효과 분석(기간제법 적용자 가운데 당월 중 계약기간 만료자의 정규직 전환율 등) 및 기간제근로자 등에 관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조 사 대 상	○ 상시(상용+임시일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 (공무원 재직기관 포함,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 소비 생산활동과 국제 및 외국기관을 제외한 나머지 산업)	
조 사 방 법	○ 종이 설문지(PAPI)를 이용한 방문조사, 전화조사, 우편조사, 팩스·이메일 조사 등 타계식 및 자계식 방법을 병행	
주요조사항목	○ 사업체 현황: 사업체 명칭, 사업내용 또는 생산품목, 사업체 소재지, 응답자, 전체 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수 ○ 기간제법 적용 근로자 현황: 특성별 근로자 수, 계약만료 시 조치사항-근속기간별 등 ○ 기간제근로자 현황: 기간제근로자 수, 입직자·이직자 수 등	

제2부 점검 결과 요약

구 분	점검결과	개선의견	비 고
주요 용어 및 항목별 정의	- 각 용어 및 항목에 대한 정의가 적절함	-	정량평가 (II-1-1. 주요 용어 및 항목별 정의의 적절성)
조사표 구성	- 조사표 수록사항 10개 중 7개 확인 - 조사표에 조사목적, 법적근거, 문의사항 연락처 명시 필요	- 조사표 수록사항 보완	정량평가 (II-3.3. 조사표 구성)
조사표 설계 및 변경 절차	- 조사표 설계 및 변경 절차가 대체로 적절함	- 조사표 설계 및 변경 절차 보완	정량평가 (II-4-1. 조사표 설계 및 변경 절차나 방법의 적절성)
조사항목의 적정성	- 조사항목 구성 및 질문 방식이 적절함	-	정성평가
응답항목 및 지시문의 적정성	- 응답항목 및 문항이동을 나타내는 지시문이 적절함	-	정성평가
기준시점의 적정성	- 조사항목별 기준시점이 적절함	-	정성평가
조사표 변경 이력 관리	- 조사표 변경 이력 관리가 적절함	-	정량평가 (II-5-1. 조사표 변경 이력 관리)
조사항목별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 조사항목별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이 적절함	-	정량평가 (III-7-1. 주요 조사항목별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의 적절성)
동일영역 통계와 일관성	- 동일영역 통계의 명칭 및 개요를 제시함	-	정량평가 (V-8. 동일영역 통계와 일관성)
유사통계항목 간 수치의 정확성	- 유사통계항목 간 추이가 동일함	-	정성평가

제3부 조사표 설계 및 유사통계 비교·분석 점검 결과

1. 점검 개요

「조사표 설계 및 유사통계 비교·분석 점검」은 응답자의 응답 부담 경감, 이해도 제고를 위해 조사표 설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측정오차를 점검하는 과정으로, 자료수집의 정확성 진단을 강화하기 위하여 점검하는 과정이다.

조사표는 조사목적에 부합하는 정보를 응답자로부터 얻기 위하여 고안된 질문들을 모아놓은 표이다. 조사표는 자료수집과정에서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자료가 조사표의 질문에 근거하여 수집되기 때문에 조사표는 자료 품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유사통계는 서로 다른 통계더라도 동일한 공표항목이 존재하는 통계를 말한다. 예를 들어 동일한 영역에서 조사통계 간 유사한 통계 항목이 존재할 수 있으며, 보고·가공통계에서 공표하고 있는 항목이 조사통계에서도 조사 후 공표되는 항목이 있을 수 있다. 통계마다 목적, 대상 범위, 표본설계가 다르므로 완벽하게 동일한 결과를 제공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유사한 내용을 공표하고 있다면 어느 정도 일관성이 있어야 이용자가 신뢰할 수 있다.

진단에서는 통계정보보고서를 기반한 절차적 점검과 조사표 항목 점검 및 유사통계 비교·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가) 조사표 설계 적정성 진단

통계정보보고서 및 기타 설명자료 등을 기반으로 주요 용어 및 항목별 정의, 조사표 구성, 조사표 설계 및 변경 절차, 조사표 변경 이력을 점검한다. 그리고 조사표 점검 및 FGI 의견을 토대로 조사항목 구성 및 질문 방식의 적정성, 응답항목 및 지시문의 적정성, 기준시점의 적정성, 조사항목별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등을 점검한다.

나) 유사통계 비교·분석 점검

점검대상이 공표하고 있는 통계 중 동일하거나 유사한 통계가 있는지 파악한다. 점검통계와 유사한 항목이 있는 통계 간의 작성기관, 작성목적, 작성대상 및 범위, 작성단위, 작성주기, 기준시점, 공표시기, 표본조사 여부, 작성규모를 비교하고 유사항목의 결과값 및 추이가 유사한지 파악한다.

2. 점검 결과

가) 조사표 설계 적정성 진단

(1) 주요 용어 및 항목별 정의

사업체기간제근로자현황조사는 전체 근로자, 입직자, 이직자 등의 주요 용어에 대한 설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응답자가 응답 시 이해하기 쉽도록 해당 항목의 포함·제외 예시를 조사표에 제시하고 있어 주요 용어 및 항목별 정의는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조사표 구성

조사표 수록사항인 조사명, 조사목적, 법적근거, 국가승인통계로고, 작성승인번호, 응답자 협조사항, 조사협조 감사인사, 조사기관, 응답자 비밀보호 정책, 문의사항 연락처 10가지 항목의 수록 여부를 확인한 결과, 조사목적, 법적근거, 문의사항 연락처 3가지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 조사표 개요

 사업체 기간제근로자 현황조사 조사기준 2022년 12월 기준 고용노동부	관서*	사업체 고유번호*	산업분류*	규모*	지역번호*
	조사자*	(인) 조사관리자*	(인)	* 이 항목은 고용노동부에서 기입합니다.	

● 이 조사는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승인받은 통계(제118042호)로서, 동 조사표에 기재된 내용은 통계법 제33조 및 제34조에 의하여 비밀이 보호되며, 통계작성 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 이 조사는 정부정책의 기초자료로 사용되므로 반드시 고용상태를 정확하게 응답 할 수 있는 인력관리책임자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조사표는 기간제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도 작성하셔야 하며, 조사표 작성 시 뒷면의 **[조사표 작성요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조사표 설계 및 변경 절차

본 통계는 정기적으로 유관기관에서 조사항목 등 의견을, 수시로 내·외부 조사표 관련 의견을 수렴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또한, 수시 간담회 등을 통해 실무자 및 조사원의 의견을 파악하여 응답자 편의 및 오류 방지를 위한 문항 로직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조사표 설계 및 변경 절차는 대체로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사전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점과 전문가 평가 및 의견수렴 후 반영 검토의 방식과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통계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다.

(4) 조사항목의 적정성¹⁾

본 통계는 사업체 기간제근로자 현황을 조사하고 있어 응답자가 기간제법 적용 근로자 현황, 기간제근로자 현원 및 입·이직 현황 등 분류별 인원수를 기입해야 하는 항목이 대부분이다. 사업체 응답자가 기입하기 용이하도록 표 형식으로 조사표를 제공하고 있으며, 기간제근로자의 근속기간별 현황을 조사하고 있어 조사항목 구성 및 질문 방식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5) 응답항목 및 지시문의 적정성²⁾

본 통계는 인원수를 기입하는 항목이 대부분이며, 선택지가 존재하는 조사항목은 ‘기간제근로자 수 증감사유’ 만 확인되었다. 응답항목 검토 결과, ‘기타’ 를 포함한 응답 가능한 모든 항목으로 구성된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증가한 경우, 감소한 경우로 나누어 다음 문항으로 이동하는 지시문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응답항목 및 문항이동을 나타내는 지시문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기준시점의 적정성

사업체기간제근로자현황조사는 반기마다 통계를 공표하고 있으며, 통계 특성상 조사항목별로 응답 기준시점이 다르다. 하반기 통계로 예를 들면, 12월 기준으로 전체적인 조사를 진행하나, 기간제근로자 수 등 11월을 기준으로 조사하는 항목이 있다. 이렇게 반기 간 노동력 파악을 위해 조사항목별 기준시점을 달리 구성해 매 주기 조사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입직자’, ‘이직자’ 등의 인원수를 상·하반기 1달을 기준으로 조사하고 있어 1년 전체를 포괄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주요 조사결과(계약기간 만료자 조치사항)가 안정적임에 따라 연평균과 비슷한 12월 및 반기 조사를 고려한 6월에 실시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1) ‘(4) 조사항목의 적정성’에 작성된 의견은 한국통계진흥원 통계품질센터 연구진의 의견으로 통계청 견해가 아님

2) ‘(5) 응답항목 및 지시문의 적정성’에 작성된 의견은 한국통계진흥원 통계품질센터 연구진의 의견으로 통계청 견해가 아님

(7) 조사표 변경 이력 관리

본 통계는 보고서를 통해 통계작성 변경 이력에 대한 기록·관리가 적절히 이뤄지고 있다. 또한, 조사표의 변경 내용 및 사유를 이전 조사표와 비교하여 기록·관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8) 조사항목별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본 통계는 예시를 포함한 조사항목별 작성요령과 유의사항을 조사표에 명시하고 있으며, 응답하기 용이하도록 항목의 포함 및 제외하는 경우를 작성하고 있어 조사항목별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유사통계 비교·분석 점검

(1) 동일영역 통계와 일관성

사업체기간제근로자현황조사는 ‘사업체’, ‘근로자(종사자)’를 조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업체노동력조사(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고용노동부)가 동일영역 통계로 확인되었다. 다만, 작성기관은 사업체노동력조사에 대한 현황 및 차이점은 파악하고 있으나,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에 대해 검토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를 작성할 때는 동일한 분야의 통계를 사전에 검토 후 통계 간의 현황, 유사 내용, 차이점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표 1> 동일영역 통계 현황

구분	사업체기간제근로자 현황조사	사업체노동력조사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작성기관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통계종류	조사통계	조사통계	조사통계
작성목적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효과 분석 및 기간제근로자 등에 관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종사자수, 노동이동 (입·이직), 빈 일자리수, 임금·근로시간 등을 파악하여 고용·임금정책의 기초자료 제공	각종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사업체 특성 및 인적 속성별로 파악하여 관련 정책수립의 기초자료 제공
작성대상 및 범위	상시(상용+임시일용)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 (공무원 재직기관 포함)	- 고용부문: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공무원 재직기관 포함) - 근로실태부문: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공무원 재직기관 제외)	근로자 1인 이상 표본사업체 및 표본사업체에 종사하는 소속 정규직 및 비정규직근로자
작성단위	사업체	사업체	사업체, 근로자
작성주기	반기	매월	1년
공표시기	상반기: 9월 말 하반기: 익년 3월	조사기준 월 익월 (근로실태부문 익익월)	조사기준년도 익년 5월 말
표본/전수	표본조사	표본조사	표본조사
작성규모	약 10,000개	약 25,000개	약 33,000개

(2) 유사통계항목 간 수치의 정확성

본 통계의 공표항목 중 유사하거나 동일한 항목을 공표하고 있는 통계를 탐색하여 작성목적, 작성대상 및 범위 등을 검토한 후 수치의 일관성이 있는지 비교하였다. 수치를 비교한 유사항목은 <표 2>와 같다.

사업체노동력조사(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고용노동부), 경제총조사(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통계청)는 ‘종사자 수’와 같이 유사항목을 조사하고 있으나, 본 통계와 작성대상 및 조사주기의 차이가 있어 비교하지 않았다.

<표 2> 유사항목 통계 현황

구분	사업체기간제근로자 현황조사	사업체노동실태현황	경제활동인구조사
유사항목	전체근로자 수	종사자 수	임금근로자 수
작성기관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통계청
통계종류	조사통계	가공통계	조사통계
작성목적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효과 분석 및 기간제근로자 등에 관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	「전국사업체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작성하여, 고용노동 정책 수립 및 관련 통계 모집단의 기초자료	국민의 경제활동 특성을 조사함으로써 거시경제 분석과 인력자원의 개발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작성대상 및 범위	상시(상용+임시일용)근 로자 5인 이상 사업체 (공무원 재직기관 포함,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 소비 생산활동과 국제 및 외국기관을 제외한 나머지 산업)	「전국사업체조사」 자료 중 자영업자 또는 자영업자+무급가족종사 자로만 구성된 사업체 (공무원 재직기관을 제외, 상용근로자 또는 임시 및 일용근로자 또는 기타 종사자가 1인 이상인 사업체를 집계)	전국 가구 내 상주하는 만 15세 이상 가구원 - 조사대상에 포함: 전입자, 비혈연 가구원, 병역특례자 - 조사대상에 제외: 군인(직업군인, 상근예비역 포함), 사회복무요원, 해외상주 취업(학)자, 형이 확정된 교도소 수감자, 요양소, 기도원 수용자
작성주기	반기	1년	매월
표본/전수	표본조사	-	표본조사
작성규모	약 10,000개	-	약 36,000가구

① 전체근로자 수

본 통계에서 공표하는 12월(2/2) 전체근로자 수와 가공통계인 사업체노동실태 현황의 5인 이상 사업체의 종사자 수를 비교한 결과, 잠정치를 제외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다소 차이가 확인되나 동일하게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경제활동인구조사의 5인 이상 사업체의 임금근로자 수는 본 통계와 동일하게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시계열적으로 증가하는 동향이 나타났다. 다만, 경제활동인구조사는 작성대상을 개인으로 조사하며 8월을 기준시점으로 공표하는 등의 차이가 있어, 수치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단위 : 명)

통계명	2017	2018	2019
사업체기간제근로자현황조사(2/2)	14,445,830	14,770,865	15,091,610
사업체노동실태현황	14,346,037	14,870,138	15,179,040
경제활동인구조사	16,421,000	16,517,000	16,775,000

1) 경제활동인구조사의 경우, 천명 단위로 공표

3. 주요 개선의견

(1) 조사표 수록사항 보완

본 통계 조사표에 수록되어 있어야 하는 항목 중 조사목적, 법적근거, 문의사항 연락처가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2) 조사표 설계 및 변경 절차 보완

조사표 설계 절차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조사표 설계의 바람직한 절차는 ①내부(자체) 검토 → ②전문가 자문회의 → ③응답자 의견수렴(시험조사, 시범조사, 사전조사, 조사표 인지면접 등) → ④통계청 변경승인이나, 사전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점과 전문가 자문회의의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표 설계 절차를 보완함으로써 이용자에게 더 유용한 통계를 생산해 낼 수 있다.

통 계 명	사업체기간제근로자현황조사
승 인 번 호	118042
작 성 기 관	고용노동부
연 구 원	이영민
연구보조원	전재현, 송은주

제1부 **점검 개요**

I. 점검 개요

- **표본설계 점검 시 검토한 자료**
 - 사업체기간제근로자현황조사 통계정보보고서
(조사개요, 작성목적, 조사설계, 통계추정 및 분석)
 - 사업체기간제근로자현황조사 표본설계 및 추정방안 연구 최종보고서(2020)
 - '22 하반기(12월 기준) 사업체기간제근로자현황조사 결과표

II. 조사 개요

조 사 명	사업체기간제근로자현황조사	
작 성 기 관 명	고용노동부	
작 성 주 기	반기	
전수/표본조사	전 수 ()	표 본 (●)
표본설계주체	자체설계()	외부용역(●)
조 사 목 적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효과 분석 및 기간제근로자에 관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조 사 대 상	○ 한국표준산업분류(10차 개정, 2017)에 의한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T), 국제 및 외국기관(U)을 제외한 나머지 산업(공무원 재직기관 포함)의 전체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 중 약 1만개 표본 사업체	
조 사 방 법	○ 전화, 우편, 팩스, 방문조사 등을 병행	

제2부 점검 결과 요약

구 분	점검결과	개선 의견	비 고
목표모집단과 조사모집단	- 목표모집단과 조사모집단 정의가 명확함	-	정량평가 (II-6-1~2. 목표모집단과 조사모집단)
표본추출틀	- 표본추출틀은 고용노동부의 '18년 12월말 사업체노동실태현황 자료	- '23년 표본설계 연구용역 실시 중	정량평가 (II-7.표본추출틀)
표본설계 방법 및 결과	- 층화이중추출방법에 따른 1, 2차 표본배분 및 표본추출방법이 제시됨	-	정량평가 (II-8-1~3. 표본설계 방법 및 결과)
무응답 대처	- 항목무응답은 허용하지 않으며, 단위무응답은 대체함	-	정량평가 (III-11.무응답 대처)
표본대체	- 표본 대체 절차와 방법을 제시하고 있음	-	정량평가 (III-12.표본대체)
항목무응답 실태	- 해당 없음	-	정량평가 (IV-4.주요 항목 무응답 실태)
항목무응답 대체	- 해당 없음	-	정량평가 (IV-5.항목 무응답 대체)
단위무응답 실태	- 최초 단위무응답률은 0.05%이고, 하위그룹별 (산업분류별, 사업체규모별) 무응답실태는 제시하지 않음	- 산업분류별, 사업체규모별 무응답현황을 파악 필요함	정량평가 (IV-6.단위무응답 실태)
가중치 조정	- 설계가중치, 무응답가중치, 사후가중치에 대한 과정과 방법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음	-	정량평가 (IV-7.가중치 조정)
통계추정 산식 및 내용	- 층화이중추출방법에 대한 모수추정, 분산추정식이 제시되어 있음	- 추정식과 분산식을 근사식으로도 제공 필요함	정량평가 (IV-8.통계추정 산식 및 내용)
표집오차 추정 방법 및 결과	- 상대표준오차 추정량 산식을 제시, 주요항목에 대한 상대표준오차 등은 제시하지 않음	- 반기별 통계표에서 주요항목에 대한 상대표준오차를 제시하여야 함	정량평가 (IV-9.표집오차 추정 방법 및 결과)

제3부 표본설계 점검 결과

1. 점검 개요

사업체기간제근로자현황조사의 통계명, 승인번호, 작성기관, 조사목적, 조사대상, 조사방법은 다음과 같다.

- (1) 통계명 : 사업체기간제근로자현황조사(작성주기 : 반기)
- (2) 승인번호 : 제118042호
- (3) 작성기관 : 고용노동부/노동시장조사과
- (4) 조사목적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효과 분석 및 기간제근로자 등에 관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 (5) 조사대상 : 한국표준산업분류(10차 개정, 2017)에 의한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T), 국제 및 외국기관(U)을 제외한 나머지 산업(공무원 재직기관 포함)의 전체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 중 통계적 방법으로 추출된 약 1만개 표본 사업체
- (6) 조사방법 : 방문조사, 전화조사, 우편조사, 팩스·이메일 조사, 인터넷 조사 등 타계식 및 자계식 방법을 병행(단, 표본개편 시점에는 방문조사 진행)
- (7) 표본설계연도 : 2020년(표본사업체 노후화 등으로 3년 주기로 표본개편)

본 표본설계 진단은 2022년 기준 「사업체기간제근로자현황조사」에 대하여 표본설계 진단 항목을 4개의 부문(모집단 및 표본추출틀 작성, 표본추출방법, 무응답처리 방법, 추정 방법)으로 구분하여 진단하였으며, 이는 통계작성기관에서 작성한 통계정보보고서, 표본설계내역서에 근거하여 실시하였다.

2. 점검 결과

가. 모집단 및 표본추출틀

(1) 현황

□ 목표모집단

- 조사기준시점 기준 현재 국내에서 산업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전체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

□ 조사모집단

- 2018년 12월말 기준 작성된 「사업체노동실태현황」 결과 중 전체(상용+임시·일용) 근로자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전 사업체
 - * 가사 서비스업(T), 국제기구 및 기타 외국기관(U)은 제외

□ 표본추출틀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실태현황, 2018년 12월 말 기준
 - 사업체노동실태현황 :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에서 임금근로자가 있는 사업체 (자영업자, 자영업자+무급가족종사자로만 구성된 사업체)를 제외하고 재구성

<표1> 산업대분류, 사업체 규모별 사업체수 현황

(단위 : 개소)

산업대분류 (KSIC10)	상근근로자(상용+임시·일용) 수 기준						합계
	5~9인	10~29인	30~99인	100~299인	300~499인	500인 이상	
A. 농업, 임업 및 어업	1,032	716	233	26	2	1	2,010
B. 광업	233	235	83	3	2	2	558
C. 제조업	74,326	44,512	17,152	3,320	354	323	139,987
D.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공급업	263	181	320	84	21	14	883
E.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1,809	1,819	860	88	2	2	4,580
F. 건설업	29,072	23,670	4,832	1,090	175	156	58,995
G. 도매 및 소매업	67,655	27,982	4,697	932	99	52	101,417
H. 운수 및 창고업	8,487	6,599	3,053	1,194	92	56	19,481
I. 숙박 및 음식점업	51,331	16,198	1,932	142	26	18	69,647
J. 정보통신업	7,704	6,084	2,530	735	115	71	17,239

산업대분류 (KSIC10)	상시근로자(상용+임시·일용) 수 기준						합계
	5~9인	10~29인	30~99인	100~299인	300~499인	500인 이상	
K. 금융 및 보험업	10,156	10,113	1,490	252	63	71	22,145
L. 부동산업	14,398	6,897	849	144	20	19	22,327
M.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9,170	11,073	3,277	835	187	162	34,704
N. 사업시설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7,693	6,429	3,472	1,379	314	362	19,649
O.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1,390	5,444	2,411	715	226	276	10,462
P. 교육서비스업	15,906	11,439	9,590	981	113	156	38,185
Q.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38,225	24,022	7,459	1,491	148	175	71,520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6,897	3,141	1,029	189	24	11	11,291
S.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개인서비스업	13,374	6,849	1,342	163	9	2	21,739
합계	369,121	213,403	66,611	13,763	1,992	1,929	666,819

<표2> 산업대분류, 사업체 규모별 상시근로자 현황

(단위 : 명)

산업대분류 (KSIC10)	상시근로자(상용+임시·일용) 수 기준						합계
	5~9인	10~29인	30~99인	100~299인	300~499인	500인 이상	
A. 농업, 임업 및 어업	6,807	11,549	10,558	3,599	659	974	34,146
B. 광업	1,652	4,312	3,687	373	792	1,181	11,997
C. 제조업	506,648	744,957	854,310	526,686	134,168	595,512	3,362,281
D.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1,724	3,369	17,868	14,713	8,004	17,089	62,767
E.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11,924	30,456	40,467	12,864	765	2,668	99,144
F. 건설업	192,295	359,420	231,133	176,059	64,411	186,787	1,210,105
G. 도매 및 소매업	426,743	418,407	223,064	144,627	36,825	51,768	1,301,434
H. 운수 및 창고업	55,461	105,775	157,702	183,152	33,453	73,694	609,237
I. 숙박 및 음식점업	323,002	227,532	87,659	22,810	9,817	13,314	684,134
J. 정보통신업	50,040	97,588	127,992	120,185	44,047	93,194	533,046
K. 금융 및 보험업	69,303	146,699	71,089	39,308	25,181	76,489	428,069
L. 부동산업	92,902	100,941	37,969	22,914	7,873	18,231	280,830
M.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23,743	171,967	162,972	135,081	70,545	226,533	890,841
N.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49,500	106,663	181,222	235,784	119,452	359,747	1,052,368
O.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9,831	100,306	121,656	117,837	88,918	273,942	712,490
P. 교육서비스업	101,789	191,105	557,138	125,250	43,320	187,090	1,205,692
Q.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245,608	370,488	386,757	235,046	55,569	244,841	1,538,309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	43,691	49,594	51,046	28,419	8,912	16,063	197,725

산업대분류 (KSIC10)	상시근로자(상용+임시·일용) 수 기준						합계
	5~9인	10~29인	30~99인	100~299인	300~499인	500인 이상	
관련 서비스업							
S.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개인서비스업	85,272	105,499	61,649	23,472	3,111	1,824	280,827
합계	2,397,935	3,346,627	3,385,938	2,168,179	755,822	2,440,941	14,495,442

(2) 점검결과

- 표본추출틀로 사용되는 「사업체노동실태현황(고용노동부)」은 통계청 전국 사업체조사의 원시자료를 익년 12월말에 제공 받아 고용노동부 행정자료 기준에 맞게 가공, 집계하여 익년 3월말에 공표하고 있다.
- 본조사의 표본설계는 표본사업체 노후화 등을 사유로 3년 마다 표본개편을 실시하여, ‘23년 표본설계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 23년에는 표본개편이 될 예정이다.

나. 표본추출방법

(1) 현황

□ 층화

- 산업대분류별(KSIC10, 7개 공표범위)
 - 공무원이 재직하는 사업체를 정부기관(Z)로 분류
- 규모층(6규모)
 - (표본층) 상시근로자수 5~9인, 10~29인, 30~99인, 100~299인, 300~499인
 - (전수층) 전체근로자 500인 이상 또는 임시근로자 150인 이상

<표3> 모집단 층화에 따른 층별 사업체 수

(단위 : 개소)

대분류	대분류 코드	표본층					전수층	합계
		5~9인	10~29인	30~99인	100~299인	300~499인		
1. 농림어업	A	1,027	695	226	25	1	3	1,977
2. 광업	B	233	235	83	3	2	2	558
3. 제조업	C	74,323	44,511	17,152	3,312	345	340	139,983
4. 건설업	F	29,071	23,670	4,832	768	22	631	58,994
5. 전기통신수송정보통신업	DHJK	25,916	22,803	7,240	2,121	273	234	58,587
6. 도소매 숙박음식	G	67,652	27,981	4,697	930	96	57	101,413
	I	51,312	16,184	1,929	141	23	22	69,611
7. 사업개인	L	14,397	6,893	846	141	17	25	22,319

대분류	대분류 코드	표본층					전수층	합계
		5~9인	10~29인	30~99인	100~299인	300~499인		
공공기타	N	7,675	6,404	3,467	1,282	272	501	19,601
	P	14,660	8,076	2,568	402	67	172	25,945
	Q	37,908	23,894	7,279	1,314	116	279	70,790
	EMRS	40,729	22,093	6,019	1,148	201	203	70,393
	Z	4,218	9,964	10,273	1,596	259	338	26,648
합계		369,121	213,403	66,611	13,183	1,694	2,807	666,819

□ 표본 크기

- 각 업종별 표본크기 결정은 기간제근로자 총수 추정에 대한 목표오차 등을 고려하여 약 11,000 사업체이다.

<표4> 목표오차에 따른 산업분류별 표본크기

대분류	대분류 코드	기존조사('19년 6월, 12월 평균)			표본수	
		표본 사업체수	기간제 수	상대 표준오차	최종 표본수	상대 표준오차
1. 농림어업	A	125	4,990	16.49%	141	15.5%
2. 광업	B	105	608	24.57%	101	25.0%
3. 제조업	C	1,807	207,424	4.72%	1,610	5.0%
4. 건설업	F	677	66,549	11.35%	791	10.5%
5. 전기운수통신금융업	DHJK	1,810	118,037	5.33%	2,057	5.0%
6. 도소매숙박음식	G	888	78,889	9.34%	956	9.0%
	I	545	155,862	7.90%	605	7.5%
7. 사업개인 공공기타	L	424	118,614	5.16%	452	5.0%
	N	635	372,571	7.78%	683	7.5%
	P	372	269,625	5.66%	394	5.5%
	Q	621	106,152	7.02%	625	7.0%
	EMRS	938	130,653	8.95%	1,040	8.5%
합계	Z	1,475	164,142	5.07%	1,517	5.5%
합계		10,418	1,794,116	2.34%	10,972	

□ 표본추출방법 : 이중추출방법(two-phase sampling)

- 1차 표본 사업체 추출
 - 전수층은 전부 배분
 - 표본층(대분류(7)×규모별(5))에 대해서는 네이만 배분
 - 산업대분류(19)별 표본배분은 해당 층에서 산업대분류별 사업체 수 기준으로 제곱근비례배분

〈표5〉 1차 표본 사업체 수

산업대분류 (KSIC10)	표본층					전수층	합계
	5~9인	10~29인	30~99인	100~299인	300~499인		
A.농림어업	22	60	79	7	1	3	172
B.광업	14	53	55	3	2	2	129
C.제조업	187	460	619	347	38	340	1,991
D.전기가스	14	51	57	43	7	15	187
E.수도하수폐기	25	51	51	29	2	3	161
F.건설업	39	133	96	42	4	631	945
G.도소매	261	465	296	130	16	57	1,225
H.운수창고업	53	194	220	168	26	74	735
I.숙박음식점업	246	283	100	27	5	22	683
J.정보통신업	46	165	186	142	22	71	632
K.금융보험업	40	151	172	130	21	74	588
L.부동산업	157	231	100	60	7	25	580
M.전문서비스	61	126	127	66	13	173	566
N.사업시설	8	23	44	44	10	501	630
P.교육서비스	38	82	111	51	8	172	462
Q.보건업	60	146	161	75	8	279	729
R.예술스포츠	27	59	57	30	5	18	196
S.협회단체	55	117	116	61	8	9	366
Z.정부기관	22	238	841	373	59	338	1,871
합계	1,375	3,088	3,488	1,828	262	2,807	12,848

- 각 층에 배정된 표본 수 만큼 산업중분류, 사업체 규모, 임시근로자 수 기준을 정렬하여 계통 추출
- 1차 표본에 대한 지방청별 현지 확인
 - 사업체 기본정보, 종사상 지위별 근로자 수, 기간제근로자 수 등
- 1차 표본사업체 중 176개의 사업체가 제거되고 최종적으로 12,672개의 사업체가 적격 사업체로 판정

〈표6〉 적격 1차 표본 사업체 수

산업대분류 (KSIC10)	표본층					전수층	합계
	5~9인	10~29인	30~99인	100~299인	300~499인		
A.농림어업	46	56	56	7	0	2	167
B.광업	16	61	45	3	2	1	128
C.제조업	258	562	473	291	92	280	1,956
D.전기가스	19	40	67	38	7	16	187
E.수도하수폐기	36	50	45	24	3	2	160

산업대분류 (KSIC10)	표본층					전수층	합계
	5~9인	10~29인	30~99인	100~299인	300~499인		
F.건설업	119	169	179	218	84	167	936
G.도소매	388	423	209	105	26	53	1,204
H.운수창고업	118	190	196	126	31	60	721
I.숙박음식점업	296	247	94	14	9	11	671
J.정보통신업	105	212	78	118	31	69	613
K.금융보험업	62	160	143	101	25	85	576
L.부동산업	215	193	88	38	7	32	573
M.전문서비스	95	102	117	66	29	147	556
N.사업시설	18	41	62	83	29	390	623
P.교육서비스	66	74	99	47	9	158	453
Q.보건업	74	134	186	102	16	214	726
R.예술스포츠	46	55	51	24	4	12	192
S.협회단체	100	126	85	41	8	1	361
Z.정부기관	47	321	752	354	64	331	1,869
합계	2,124	3,216	3,025	1,800	476	2,031	12,672

○ 2차 표본 사업체 추출

- 1차 표본 12,672개 사업체에서 2차 표본 사업체 선정
- 전수층의 사업체는 모두 선정
- 표본층에서는 1차 표본 수에 비례하여 2차 표본 수 배정
- 2차 표본추출에서는 기간제근로자가 있는 사업체와 없는 사업체로 나누는 사후층화 실시(2차 표본 약 10,500개소)

<표7> 2차 표본 사업체 수

산업대분류 (KSIC10)	표본층					전수층	합계
	5~9인	10~29인	30~99인	100~299인	300~499인		
A.농림어업	37	41	49	4	0	2	133
B.광업	13	52	34	1	0	1	101
C.제조업	218	439	375	226	72	280	1,610
D.전기가스	15	28	48	33	7	16	147
E.수도하수폐기	28	41	33	18	2	2	124
F.건설업	106	156	162	203	78	167	872
G.도소매	307	333	165	78	20	53	956
H.운수창고업	94	149	162	94	23	60	582
I.숙박음식점업	231	203	67	12	7	11	531
J.정보통신업	76	172	66	93	26	69	502

산업대분류 (KSIC10)	표본층					전수층	합계
	5~9인	10~29인	30~99인	100~299인	300~499인		
K.금융보험업	55	136	105	71	17	85	469
L.부동산업	162	155	67	31	5	32	452
M.전문서비스	71	89	98	51	20	147	476
N.사업시설	16	37	58	75	25	390	601
P.교육서비스	56	59	74	38	9	158	394
Q.보건업	64	112	146	77	12	214	625
R.예술스포츠	35	41	43	20	4	12	155
S.협회단체	75	105	69	29	6	1	285
Z.정부기관	36	239	582	280	49	331	1,517
합계	1,695	2,587	2,403	1,434	382	2,031	10,532

(2) 점검결과

- 표본추출방법은 이중추출방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1차, 2차 표본 규모와 표본배분방법, 표본추출방법에 대해 잘 제시하고 있다.

다. 무응답처리

(1) 현황

무응답 대처

- 항목무응답 대처 방법
 - 항목무응답 허용하지 않으므로, 해당사항 없음
- 단위무응답 대처 방법
 - ‘결번/대상 아님’, ‘폐업’, ‘중복’, ‘휴업’ 등으로 단위무응답이 발생할 경우 표본대체 실시

표본대체

- 표본대체 허용 기준
 - 결번 : 전화번호가 결번이고 사업체 소재지 파악이 불가능한 경우
 - 대상 아님 :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상용+임사·일용)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 폐업 : 폐업으로 조사가 불가능한 경우

- 중복 : 표본명부 내 2개 이상의 사업체가 동일한 사업체인 경우 1개 사업체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체는 대체
- 휴업 : 휴업으로 조사가 불가능한 경우
- ※ 단, 회사사정 혹은 계절적인 요인으로 인한 일시적 혹은 단기적인 휴업이고, 향후 사업재개 여부시기가 정해져 있는 경우는 대체하지 않고 조사

○ 표본대체 절차 및 방법

1) 항목무응답 대체 방법

- 응답이 어려운 문항에 대하여 조사표에 관련 지침을 표기하거나 응답이 어려운 사유를 별도로 기입
- 바로 응답하기 곤란한 문항은 차후 조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처리

2) 단위무응답 대체 방법

- ‘고용노동통계조사 무응답 매뉴얼(현장조사)’에 따라 거부 조사대상 관리 및 표본대체
- 대체 절차 : ① 동일산업(소분류→중분류→대분류)*, ② 동일규모(±1규모) 내에서 ③ 「자동대체(조사입력관리시스템→수동대체(현장에서 사업체 발굴)」순으로 대체

* 소분류(앞 3자리 숫자), 중분류(앞 2자리 숫자), 대분류(알파벳 문자)

- 대체 요령

- ① 조사중단 사업체와 동일한 산업분류, 규모의 사업체를 선정
 - ※ 대체 시 기간제 유·무 여부도 일치시켜야 함
- ② 전화, 출장을 통해 사업체의 실제 산업분류, 규모 확인
- ③ 동일한 산업분류, 규모로 확인된 경우, 대체사업체로 확정하여 새로운 사업체번호를 부여하고 조사 실시

□ 주요 항목무응답 실태

- 항목무응답 허용하지 않으므로, 해당사항 없음

항목무응답 대체

- 항목무응답 허용하지 않으므로, 해당사항 없음

단위무응답 실태

최초 단위무응답률 수치

- 단위무응답률 : 0.05%(' 22 상반기 조사 기준)

단위무응답률 산출 산식

- 단위무응답률(%)=(단위)무응답 표본사업체 수/조사대상 표본사업체 수×100

주요 하위그룹 및 무응답 사유별 무응답률

- 무응답 사유별 무응답률(' 22 상반기 조사 기준)
 - 업무과다 71.4%
 - 표본선정 불만 28.6%
 - 업체 내부사정 14.3%
 - 정보보호 14.3%

(2) 점검결과

- 본 조사는 항목무응답은 허용하지 않으며, 표본사업체의 대체 절차와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하위그룹별 무응답률에 대해서는 제시하지 않으므로, 예를 들면 사업체 지역별 또는 산업분류별로 무응답률을 제시하도록 한다.

라. 추정

(1) 현황

가중치 조정

1) 설계가중치 산출

- 1차 표본 가중값과 2차 표본 가중값의 곱으로 산정

- 1차 표본 설계가중값 : $w_{gh} = \frac{N_{gh}}{n_{gh}}$
 - N_{gh} : 대분류 g 의 규모층 h 의 모집단 크기
 - n_{gh} : 대분류 g 의 규모층 h 의 1차 표본 크기
- 2차 표본 설계가중값 : $w_{ghj} = \frac{n_{ghj}}{m_{ghj}}$
 - n_{ghj} : 대분류 g 의 규모층 h 의 사후층 j 의 1차 표본 크기
 - m_{ghj} : 대분류 g 의 규모층 h 의 사후층 j 의 2차 표본 크기
- 최종 설계가중값 : $w_{ghj}^* = w_{gh} w_{ghj}$, 대분류 g , 규모 층 h , 사후층 j

2) 무응답가중치 조정

- 무응답 보정계수 : $F_{ghjk} = \frac{m_{ghj}}{m_{ghj}^*}$
 - m_{ghj}^* : 대분류 g 의 규모층 h 의 사후층 j 의 2차 표본의 응답 사업체 수
- 무응답 조정 가중값 : $w_{ghjk}^{(1)} = w_{gh} w_{ghj} F_{ghjk}$
 - 대분류 g , 규모 층 h , 사후층 j 의 사업체 k

3) 사후가중치 조정

- 벤치마킹 정보는 해당 조사월의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중 산업대분류 (19개) 및 규모구분(5~299인, 300인 이상)에 대한 총 근로자수 추정값을 이용

- 사후층화 조정값 : $BMKF_{(g,h) \in d} = \frac{\hat{M}_d}{\sum_{(g,h) \in d} \sum_{j=1}^2 \sum_{k=1}^{n_{ghj}} w_{ghjk}^{(1)} \times x_{ghjk}}$

- d : 사후층 구분으로 산업대분류 및 규모(5~299인, 300인 이상)로 구성
- x_{ghjk} : 대분류 g 의 규모층 h 의 사후층 j 의 사업체 k 에서 조사된 총 근로자 수

- $w_{ghjk}^{(1)}$: 대분류 g 의 규모층 h 의 사후층 j 의 사업체 k 의 무응답 조정 가중값
- \widehat{M}_d : 사후층 d 에서 총 근로자 수 추정값(벤치마킹 대상)

4) 최종 가중치

○ 최종 가중치는 설계가중값, 무응답보정계수, 사후층화조정값의 곱으로 산정

- 최종 가중값 : $w_{ghjk}^* = w_{gh} w_{ghj} F_{ghjk} BMKF_{ghjk}$

→ 대분류 g , 규모 층 h , 사후층 j 의 사업체 k 최종가중값

□ 통계추정 산식 및 내용

○ 추정하고자 하는 주요 모수 및 추정 산식

1) 총계 추정

- 상시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총계는 최종가중값을 이용하여 추정

- 상시근로자 총계 추정량 : $\hat{t}_x = \sum_{g=1}^G \sum_{h=1}^H \sum_{j=1}^J \sum_{k=1}^{m_{ghj}} w_{ghjk}^* x_k$

- 기간제근로자 총계 추정량 : $\hat{t}_y = \sum_{g=1}^G \sum_{h=1}^H \sum_{j=1}^J \sum_{k=1}^{m_{ghj}^*} w_{ghjk}^* y_k$

2) 평균, 비율 추정

- 사업체의 상시근로자 수 평균 추정량 : $\bar{x}_w = \frac{\sum_{g=1}^G \sum_{h=1}^H \sum_{j=1}^J \sum_{k=1}^{m_{ghj}} w_{ghjk}^* x_k}{\sum_{g=1}^G \sum_{h=1}^H \sum_{j=1}^J \sum_{k=1}^{m_{ghj}} w_{ghjk}^*}$

- 사업체의 기간제근로자 수 평균 추정량 : $\bar{y}_w = \frac{\sum_{g=1}^G \sum_{h=1}^H \sum_{j=1}^J \sum_{k=1}^{m_{ghj}^*} w_{ghjk}^* y_k}{\sum_{g=1}^G \sum_{h=1}^H \sum_{j=1}^J \sum_{k=1}^{m_{ghj}^*} w_{ghjk}^*}$

- 비에 대한 추정은 기간제근로자 총계를 근로자 총계로 나눔

- 기간제근로자 수 비율 : $\hat{p} = \frac{\hat{t}_y}{\hat{t}_x}$

□ 표본오차 추정 방법 및 결과

1) 분산, 표준오차 등의 추정방법

○ 분산추정량

- 전체 근로자 수 분산추정량

$$\widehat{Var}(\hat{t}_x) = \sum_{g=1}^G \sum_{h=1}^H \left(\frac{n_{gh}-1}{n_g-1} - \frac{n_{gh}-1}{N_g-1} \right) \frac{w_{gh} S_{gh}^2}{n_{gh}} + \frac{N-n}{N} \sum_{g=1}^G \sum_{h=1}^H w_{gh} (\bar{x}_{gh} - \bar{x}_w)^2$$

- 기간제근로자 수 분산추정량

$$\widehat{Var}(\hat{t}_y) = \sum_{g=1}^G \sum_{h=1}^H \left(\frac{n_{gh}-1}{n_g-1} - \frac{n_{gh}-1}{N_g-1} \right) \frac{w_{gh} S_{gh}^2}{n_{gh}} + \frac{N-n}{N} \sum_{g=1}^G \sum_{h=1}^H w_{gh} (\bar{y}_{gh} - \bar{y}_w)^2$$

○ 상대표준오차

- 상시근로자 수 상대표준오차 추정량 : $cv(\hat{t}_x) = \frac{\sqrt{\widehat{Var}(\hat{t}_x)}}{\hat{t}_x} \times 100$

- 기간제근로자 수 상대표준오차 추정량 : $cv(\hat{t}_y) = \frac{\sqrt{\widehat{Var}(\hat{t}_y)}}{\hat{t}_y} \times 100$

2) 주요 항목들에 대한 상대표준오차, 신뢰구간

- 내용 없음

(2) 점검결과

○ 층화이중추출방법에 대한 모수추정식과 분산추정식이 제시되어 있으나, 제시된 추정식과 분산식이 다소 복잡하기 때문에 분산추정의 근사식을 함께 제공하도록 한다.

○ 표본설계과정에서 주요 항목들에 대한 상대표준오차를 검토하여 표본크기를 결정하고 표본을 배분하였으므로, 반기별 통계표 공표 시에도 상대표준오차를 함께 제공하여 신뢰도 높은 통계를 생산하도록 한다.

붙임6

마이크로데이터 품질 점검 결과

통 계 명	사업체기간제근로자현황조사
승 인 번 호	118042
작 성 기 관	고용노동부
연 구 원	오유진
연구보조원	설민지

제1부 **점검 개요**

I. 점검 개요

- 마이크로데이터 품질점검 시 검토한 자료
 - 통계정보보고서(통계작성 기획, 통계설계, 통계처리 및 분석)
 - 보도자료
 - 조사표, 항목 및 코드집, 가중치
 - 조사지침서, 내검규칙, 집계표 설계서
 - 통계승인사항

- 마이크로데이터 품질점검 내용
 - 관리 주체, 마이크로데이터 메타자료 현황 점검
 - 표본설계와의 일치성 점검
 - 공표자료와 마이크로데이터 집계치의 일치율 점검

II. 마이크로데이터 개요

조 사 명	사업체기간제근로자현황조사	
작 성 기 관 명	고용노동부	
작 성 주 기	반기	
작성기준년도	2019년 1/2	
전수/표본조사	전 수 ()	표 본 (●)
조 사 대 상	○ 상시(상용+임시일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공무원 재직 기관 포함,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 소비 생산활동과 국제 및 외국기관을 제외한 나머지 산업)	
주요조사항목	○ 사업체 현황: 사업체 명칭, 사업내용 또는 생산품목, 사업체 소재지, 응답자, 전체 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수 ○ 기간제법 적용 근로자 현황: 특성별 근로자 수, 계약만료 시 조치사항-근속기간별 등 ○ 기간제근로자 현황: 기간제근로자 수, 입직자·이직자 수 등	

제2부 점검 결과 요약

구 분	점검결과	개선 의견	비 고
마이크로데이터 생성·관리 현황	- 작성기관에서 생성·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정량평가 (V-13. 마이크로데이터 생성·관리)
마이크로데이터 서비스 현황	- 마이크로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지 않음	- MDIS(통계청)를 통해 마이크로데이터 제공 검토	정량평가 (V-14. 마이크로데이터 서비스)
마이크로데이터 관련 메타자료 보유 현황	- 가중치를 포함한 마이크로데이터, 조사표, 코드집 및 파일설계서 등의 메타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정성평가 - 보고서 미보유
일치율	- KOSIS 통계표와 마이크로데이터 간의 일치 여부 최종 점검 결과, 5개의 통계표 중 5개(100%)의 통계표가 일치함	-	정량평가 (V-15. 마이크로데이터 일치율)
표본설계와의 일치성	- 모수추정식에 따른 통계를 산출하고 있음 - 표본 배분 결과와 마이크로데이터 건수가 다소 차이남	- 표본설계에 따른 조사수행 관리	정성평가
기타	- 일치율 점검 과정에서 1개의 변수에 대해 코드집 수정이 이루어짐	-	정성평가

제3부 마이크로데이터 품질 점검 결과

1. 점검 개요

마이크로데이터 품질 점검은 통계작성기관이 보유 및 관리하고 있는 마이크로데이터 및 관련 메타자료를 제공받아 기초점검 및 실질점검(표본설계와의 일치성 점검, 일치율 점검)을 실시하였다.

기초점검은 관리기관 적합성과 메타자료 적정성(누락자료, 파일형태, 주요항목의 이상여부)을 점검하며, 실질점검은 표본설계와의 일치성(표본 크기, 모수 추정식 등)을 점검하고 현재 공표된 통계표와의 수치비교를 통하여 마이크로데이터 정합성을 점검하는 것이다.

점검 결과는 관리기관 적합성, 메타자료 적정성에 대하여 점검 의견으로 정리하였고, 마이크로데이터 오류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마이크로데이터 품질점검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 및 개선 요구사항 등을 종합하여 정리 및 분석하였다.

사업체기간제근로자현황조사는 반기마다 조사가 이루어지며 조사 결과는 상반기 조사기준년도 9월, 하반기 익년 3월에 공표하고 있다. 최신 공표자료는 2022년 기준 조사자료(2023년 3월 공표)이나 마이크로데이터 품질 점검 일정에 의해 작성기준년도가 2019년인 자료를 점검하였다.

2. 점검 결과

(1) 마이크로데이터 생성·관리 현황

사업체기간제근로자현황조사 마이크로데이터는 작성기관인 고용노동부에서 반기 주기로 생성하고, 관리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본 통계는 조사표 검수, 입력 오류 확인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전산처리가 완료된 데이터를 기준으로 논리내검 및 범위내검 등을 통한 데이터 클리닝 과정을 거쳐 최종 마이크로데이터를 생성하여 관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마이크로데이터 서비스 현황

사업체기간제근로자현황조사는 현재 마이크로데이터를 서비스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법 관련 항목으로 구성되어 자료 이용자 범위가 넓지 않으며 해석·분석범위가 제한되어 있어 마이크로데이터를 미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마이크로데이터 관련 메타자료 보유 현황

통계이용자가 마이크로데이터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마이크로데이터뿐만 아니라 마이크로데이터에 대한 메타자료도 필요하다. 데이터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데 필요한 메타자료에는 조사표, 코드집 및 파일설계서, 공표용 보고서 등이 있다. 이 밖에도 조사지침서, 내검규칙, 집계표설계서 등의 참고자료가 있으며 경우에 따라 데이터 스크립트, 리코딩 방법, 가중치 산술식, 통계기법 설명자료 등이 필요하다.

사업체기간제근로자현황조사의 경우, 조사표, 항목 및 코드집, 가중치 등의 필수자료와 조사지침서, 내검 규칙 등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점검용 자료 제출여부>

항목	상세	제출여부	비고
마이크로 데이터	KOSIS 집계표 기준 모든 변수 및 가중치 포함 (TXT, SPSS, SAS, XLSX 등 형식)	제출	-
	조사표	제출	-
필수 메타자료	코드집 및 파일설계서 (무응답 처리방법 포함)	제출	-
	공표용 보고서	미제출	보도자료 공표

(4) 일치율

KOSIS 통계표와 마이크로데이터를 통해 재현한 통계표 간 일치율 최종 점검 결과, 5개의 통계표 중 5개(100%)의 통계표가 모두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 일치율 점검 결과>

점검 집계표 수(개)			일치율(%)
계	일치 수	불일치 수	
5	5*	0	100

*소수점 차이 포함(한 단위 이하)

(5) 표본설계와의 일치성¹⁾

정확성 높은 통계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표본설계에 따른 추정이 이뤄져야 한다. 이를 점검하기 위해 주요 모수를 대상으로 추정식과 동일하게 집계하고 있는지 확인하였으며, 표본 설계된 표본 크기와 마이크로데이터 건수 간 일치 여부를 점검하였다.

먼저, 본 통계의 모수 추정식을 마이크로데이터 및 통계프로그램을 활용해 검증한 결과, <참고 1> 추정식과 동일하게 집계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참고 1>

모수 추정식

$$\hat{t}_x = \sum_{g=1}^G \sum_{h=1}^H \sum_{j=1}^J \sum_{k=1}^{m_{ghj}} w_{ghjk}^* x_k$$

$$\hat{t}_y = \sum_{g=1}^G \sum_{h=1}^H \sum_{j=1}^J \sum_{k=1}^{m_{ghj}^*} w_{ghjk}^* y_k$$

(g : 산업대분류 층, h : 규모 층, j : 사후층, k : 사업체,

m_{ghj} : 대분류 g , 규모 h 의 사후층 j 의 2차 표본 크기,

m_{ghj}^* : 대분류 g , 규모 h 의 사후층 j 의 2차 표본의 응답 사업체 수)

(x_k : 상시근로자 수 / y_k : 기간제 근로자 수 / w_{ghjk}^* : 최종가중치)

다음으로 본 통계의 표본 배분 결과와 마이크로데이터 건수 간 일치 여부를 점검한 결과, <참고 2>와 같이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 점검용 마이크로데이터에서 확인 가능한 변수로 점검한 결과임

<참고 2>

할당 표본 크기

대분류	산업 대분류	5-9인	10-29인	30-99인	100- 299인	300- 499인	전수층	합계
1.농림어업	A	40	52	28	8	0	1	129
2.광업	B	25	43	32	2	1	3	106
3.제조업	C	235	493	460	247	89	278	1,802
4.건설업	F	95	112	130	175	70	104	686
5.전기운수 통신금융업	D	24	28	78	52	4	16	202
	H	77	121	188	172	26	40	624
	J	69	133	176	131	27	53	589
	K	96	194	98	43	7	65	503
6.도소매 숙박음식	G	313	204	175	157	27	31	907
	I	201	213	99	19	8	14	554
7.사업개인 공공기타	L	160	134	88	26	11	10	429
	N	20	79	107	154	74	215	649
	O	50	186	170	199	123	245	973
	P	68	136	209	133	43	91	680
	Q	134	160	121	99	16	123	653
	E	52	28	26	9	2	1	118
	M	89	71	66	69	46	111	452
	R	26	47	44	45	10	6	178
S	94	77	50	35	9	1	266	
전체		1,868	2,511	2,345	1,775	593	1,408	10,500

마이크로데이터 건수

대분류	산업 대분류	5-9인	10-29인	30-99인	100- 299인	300- 499인	전수층	합계
1.농림어업	A	38	53	27	5	0	1	124
2.광업	B	20	52	28	2	2	1	105
3.제조업	C	267	526	465	225	98	248	1,829
4.건설업	F	102	140	121	152	55	104	674
5.전기운수 통신금융업	D	19	13	49	33	6	15	135
	H	69	134	195	159	25	39	621
	J	74	149	172	110	35	52	592
	K	89	199	97	47	12	59	503
6.도소매 숙박음식	G	291	225	179	135	30	29	889
	I	220	208	82	20	2	8	540
7.사업개인 공공기타	L	155	132	56	26	12	10	391
	N	42	89	133	139	78	184	665
	O	43	159	197	200	103	271	973
	P	59	143	220	128	38	94	682
	Q	121	171	116	95	26	124	653
	E	46	45	61	26	2	2	182
	M	79	78	69	68	51	102	447
	R	23	52	43	39	11	9	177
S	83	76	45	26	3	4	237	
전체		1,840	2,644	2,355	1,635	589	1,356	10,419

(6) 기타

마이크로데이터 일치율 점검과정에서 [산업분류]의 변수가 데이터와 코드집에 일부 차이가 있음에 따라 코드집의 수정이 이루어졌다.

3. 주요 개선의견

(1) MDIS(통계청)를 통해 마이크로데이터 제공 검토

통계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통계청 MDIS를 통한 마이크로데이터 서비스 활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마이크로데이터 서비스 시 이용자들은 정책반영, 연구목적, 현황 파악 등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어 이용자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

(2) 표본설계에 따른 조사수행 관리

표본설계 내역서에 제시된 층별 표본 수와 마이크로데이터 건수 간 비교 결과 다소 차이가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편차를 줄이기 위해 향후 작성기관에서 표본설계에 따른 조사가 수행될 수 있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표본설계에 따른 마이크로데이터 생성이 가능하여 통계의 품질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 점검 집계표 일치 여부

<점검 집계표별 일치 여부>

구분	통계표명	일치여부
KOSIS (5개)	사업체 규모별 기간제근로자 수	일치
	산업별 기간제근로자 수	일치
	산업별 계약기간 만료자 조치현황	일치
	규모별 계약기간 만료자 조치현황	일치
	근속기간별 계약기간 만료자 조치현황	일치

부 록. 통계품질진단 개요

1. 통계품질진단의 개념

현대적 의미의 통계품질은 ‘통계가 이용자에게 얼마나 이용하기 적합하게 작성 및 제공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특성’으로서 통계품질관리는 ‘통계이용자들에게 통계를 사용하는데 적합하도록 생산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이용자에게 만족을 주면서 가장 경제적인 방법으로 통계를 작성·보급·관리하기 위한 모든 수단을 통합하는 체계’를 말한다.

따라서, 통계품질진단이란 생산된 통계가 이용자에게 얼마나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과정으로서 국가 정책 결정의 기초 자료로 이용되는 국가승인통계에 대한 품질수준을 진단하여 국가통계의 품질 향상 및 신뢰도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통계청에서는 통계품질의 수준을 관련성, 정확성, 시의성/정시성, 비교성/일관성, 접근성/명확성이라는 5가지 차원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통계품질진단은 5가지 차원의 품질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측정하고 각 차원의 품질수준을 높이기 위해 통계를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지 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통계청이 제시한 통계품질진단의 과정은 첫째, 통계정보보고서를 활용한 품질진단, 둘째, 자료수집 체계 점검, 셋째, 조사표 설계 및 유사통계 비교·분석 점검, 넷째, 표본설계 점검, 다섯째, 이용자 요구사항 반영실태 점검, 여섯째, 마이크로데이터 품질 점검, 일곱째, 공표자료 오류 점검으로 이루어지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통계생산과정에 대한 품질관리에 기초한 보다 정확하고 신뢰성이 높은 우수한 통계를 생산함과 동시에 이렇게 생산된 통계가 향후 이용자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는데 통계품질진단의 필요성과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2. 통계품질진단 체계

가. 통계정보보고서 작성

통계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이용이 활성화되면서 통계자료와 함께 해당 통계의 작성 방법 등의 정보 요구도 높아졌다. 그 동안의 품질진단에서는 통계 작성 절차에 따른 양적·질적 정보를 「통계정보보고서」로 작성하여 통계 이용자에게 제공하였다. 또한, 통계생산자가 통계생산의 기반자료로 활용하여 절차적 품질 수준을 향상하도록 하였다.

이에 새롭게 생산된 통계도 이용자용 가이드이자 생산자용 편람으로 사용하기 위한 「통계정보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지속적으로 생산하는 통계는 기존에 작성된 「통계정보보고서」를 보완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나. 통계정보보고서 활용 진단

이용자의 정확한 이해와 활용, 통계제반과정 및 산출물에 대한 정보 등 각 과정에 대한 품질정보 제공을 위한 통계정보보고서는 총 6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진단에서는 「통계정보보고서」에 수록되어 있는 6개의 작성절차별로 품질지표를 구성하여 통계의 품질수준을 측정하며, 기본적인 통계작성절차를 준수하는지 여부도 점검한다.

(1) 제1장 통계작성 기획

통계 이용자의 입장에서 통계의 특성과 필요성 등 핵심적인 내용이 통계 개요에 수록되어 있는지 점검하고, 통계작성절차 전반에 대하여 진단한 결과를 작성한다. 또한 통계에 대한 작성목적이 명확한지, 통계의 주된 활용 분야가

무엇인지 등을 진단하고, 통계를 이용하는 이용자에 대한 관리 및 의견수렴 등에 대한 점검 결과를 기반으로 진단결과를 작성한다.

(2) 제2장 통계설계

통계는 작성목적에 맞게 조사내용 및 조사표를 설계하여야 하며, 응답자에게 조사목적에 부합하는 정보를 얻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응답자가 쉽게 응답할 수 있도록 용어나 분류 기준 등을 국내 또는 국제기준을 적용하는지 점검하고, 조사표의 기본 구성요소에 대한 수록 여부 등을 진단한다. 또한, 통계는 시대가 변함에 따라 진화하고 발전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조사표의 변경이력 등이 관리되고 있는지 진단한다.

또한, 조사를 위해서는 모집단과 표본추출틀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게 설정되어야 하며, 특히 표본 조사의 경우 표본설계 및 모집단과 표본추출틀의 주기적인 갱신 등을 검토하고 진단결과를 작성한다.

(3) 제3장 자료수집

통계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조사표를 이용하여 응답자로부터 응답을 받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작업이다. 시대가 변함에 따라 자료를 수집하는 방식도 변화하고 있으며, 응답률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면접조사의 경우, 조사원의 채용 및 교육 등은 조사의 성공 여부를 좌우할 정도로 중요하다. 조사를 위한 업무, 조사준비, 홍보, 명부보완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지를 진단하고,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관리방안 등이 마련되어 있는지도 진단한다. 그리고 무응답이 발생한 경우, 적절한 대체 방법이 강구되어 있는지를 점검하고, 사후조사 실시 여부 및 결과 조치방안을 확인한다. 위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진단결과를 작성한다.

또한 조사환경이 열악해짐에 따라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조사 자료의 보완 및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통계에 활용하는 행정자료의 활용 목적 및 내용, 특성 등을 파악하여 본 통계작성에 활용하는지에 대해 검토하고 진단 결과를 작성한다.

(4) 제4장 통계처리 및 분석

수집된 자료를 시스템적으로 검토하고 작성하기 위해, 코딩 및 코드체계 등이 정립되어 있는지와 입력된 자료를 기반으로 자료를 내검하는 방식과 무응답의 유형에 따른 실태 등을 점검한다. 수집된 자료 중 행정자료를 활용하는 경우, 행정자료의 매칭방법 등을 대해 검토하고 진단 결과를 작성한다. 즉, 통계로 작성되기 위해 사용되는 자료의 처리과정 전반에 대하여 점검한 후 진단 결과를 작성한다.

수집된 자료에 대한 기본적인 정제작업이 완료되면, 이것을 기반으로 통계를 추정하고 분석하게 된다. 통계추정을 위해선 표본설계 당시와 동일하게 조사되지 못한 부분을 가중치 조정 등을 통해 추정을 실시하고, 주요 항목들에 대한 변동계수 등이 기획의도와 동일하게 도출되고 있는지 등을 검토한다.

특히 지수를 작성하는 통계의 경우, 지수 유형 및 산식 등을 점검하고 개편 여부 등을 점검한다. 또한, 계절조정이 필요한 통계의 경우, 계절조정과정 및 내용에 대하여 점검한다. 이 모든 과정에 대하여 점검하고 진단결과를 작성한다.

(5) 제5장 통계공표, 관리 및 이용자서비스

통계가 작성되면 그 통계결과를 공표하여 이용자가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이용에 혼란을 줄 수 있는 사항은 사전에 공지하여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따라서 공표일정, 통계설명자료 제공현황, 마이크로데이터 제공현황, 비밀보호 및 보안사항 등을 점검하고 진단결과를

작성한다. 또한 통계작성방법 유지, 시계열 단절 여부 등과 동일영역 통계와의 일관성 등도 점검하고 진단결과를 작성한다.

(6) 제6장 통계기반 및 개선

통계를 작성하는 환경에 대한 진단 또한 통계의 품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통계를 기획하고 분석하는 인력 현황과 위탁에 의해 작성되는 경우, 통계청에서 제시한 통계조사 민간위탁 지침의 준수여부와 통계품질향상을 위한 노력 등을 점검하고 진단결과를 작성한다.

다. 자료수집 체계 점검

자료수집체계 점검은 조사기획자, 조사관리자, 조사원 등 자료수집 과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자료가 정확히 수집되었는지, 절차적 오류는 없는지 등을 점검한다. 특히, 자료수집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자료수집 오류의 가능성을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발생한 또는 발생 가능한 문제점을 찾아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자료수집 과정에서의 품질을 개선하려는 과정이다.

라. 이용자 요구사항 반영실태 점검

통계 이용자는 이용하는 통계로부터 기대하는 정보를 충분히 얻기 원하므로, 품질이 우수한 통계는 이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많이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통계 이용자가 해당 통계자료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진단 대상통계와 관련하여 정책수립 및 평가, 학술연구 등에 직접 활용한 경험이 있는 전문 또는 일반이용자로 구성된 이용자 요구사항 반영실태 점검(FGI)을 실시하여 통계이용자의 통계에 대한 만족 수준과 요구사항 반영수준이 충분히 반영되는지를 진단한다.

마. 공표자료 오류 점검

작성절차에서는 오류가 없는 통계일지라도 공표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한다면

통계품질을 떠나 잘못된 통계를 사용하게 된다. 공표자료 오류 점검에서는 통계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KOSIS에 제공되는 통계표에 대한 수치, 단위표기, 주석 등을 점검하고, 국제기구 제공 통계의 경우에는 기관에서 제공한 수치와 국제기구에서 보고서 및 DB를 통해 발표한 수치를 상호비교하여 불일치한 수치 유무를 점검한다.

바. 조사표 설계 및 유사통계 비교·분석 점검

조사표 설계 점검에서는 주요 용어 및 항목별 정의, 조사표 구성, 조사표 설계 및 변경 절차, 설문응답 지시문, 응답보기의 포괄성·상호배타성을 만족하는지 점검한다. 그 다음 각 항목별 기준시점에 일관성, 조사표 변경 이력, 조사항목별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을 점검한다.

유사통계 비교·분석 점검은 공표하고 있는 통계 중 동일하거나 유사한 통계가 있는지 검토한다. 점검통계와 유사한 항목이 있는 통계간의 작성기관, 작성목적, 작성대상 및 범위, 작성단위, 작성주기, 기준시점, 공표시기, 표본조사 여부, 작성규모를 비교하고 유사항목의 결과값 및 추이가 유사한지 점검한다.

사. 표본설계 점검

표본설계 점검에서는 진단통계의 모집단, 표본추출틀, 표본추출방법, 목표오차, 표본규모, 가중치, 추정식, 주요 항목별 공표 범위 등 표본설계와 관련한 일련의 과정을 정밀 검토하여, 모집단을 잘 대표하는 통계자료가 생산되고 있는지 점검한다.

아. 마이크로데이터 품질 점검

이용자의 유용한 마이크로데이터 활용을 위하여 충분한 메타데이터(파일설계서, 코드북 등) 및 정확한 마이크로데이터 제공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마이크로데이터 품질 점검에서는 데이터의 정확성 진단을 목적으로 마이크로데이터 관리체계 및 메타자료 점검, KOSIS 공표항목 기준 집계표 일치율을 점검한다.

3. 통계품질 수준 측정

(1) 관련성

관련성이란 이용자 관점에 초점을 둔 측면으로 통계의 포괄범위와 개념, 내용 등이 이용자 요구에 부합되는 정도를 의미한다. 즉, 통계이용자에게 얼마나 의미 있고 유용한 통계를 작성하여 제공하고 있는가와 관련된 개념이다. 여기서는 통계의 작성목적에 명확히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이용자 파악, 전문가 자문회의, 이용자 만족도 조사 등 이용자 요구를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통계에 반영하고 있는지와 관련한 사항을 중심으로 점검한다.

(2) 정확성

정확성이란 측정하고자 하는 모집단의 특성을 추정함에 있어 이 추정된 값이 미지의 참값에 얼마나 근접하는가의 정도를 의미한다. 정확성과 관련한 품질진단에서는 표본설계, 표본오차, 비표본오차, 자료수집방법, 면접소요시간 등을 중심으로 발생 가능한 표본오차 및 비표본오차의 크기와 발생원인 등을 탐색하고 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지를 점검한다.

(3) 시의성 및 정시성

시의성은 작성기준시점과 결과공표시점간의 차이를 나타내는 통계의 현실 반영도와 관련된 개념으로서 작성기준시점과 결과발표시점이 근접할수록 시의성이 높은 통계이다.

정시성은 공표한 날짜와 사전에 계획된 공표 날짜 사이의 시간 지체 정도를 나타내며, 예고된 공표시기를 정확히 준수하는가에 대한 개념이다. 여기서는 통계작성주기, 작성기준시점과 공표일까지의 소요기간, 공표예정일과 실제공표일의 차이, 공표지연 사유 등을 중심으로 점검한다.

(4) 비교성 및 일관성

비교성은 시간 흐름과 영역에 따라 비교되는 정도를 의미한다. 즉, 시간이나 공간이 달라도 통계자료가 공통된 기준(통계개념, 측정도구, 측정과정 및 기초자료)으로 집계되어 서로 비교 가능한지를 진단하는 차원이다. 따라서 비교성에서는 지리적 및 비지리적 영역 또는 시간적 통계를 비교할 때 통계작성에 적용된 개념, 정의와 측정방법의 차이가 주는 영향 등을 중심으로 점검한다.

일관성이란 동일한 경제·사회현상에 대해 서로 다른 기초자료나 작성방법, 작성주기(공표주기)에 의해 작성된 통계자료들이 서로 얼마나 유사성을 지니는가에 대한 정도를 의미한다. 따라서 서로 다른 기초자료나 작성방법에 의해 작성되었더라도 동일한 현상을 반영하는 통계자료들은 서로 유사한 결과를 보여야 한다. 일관성에서는 잠정자료와 확정자료, 연간자료와 분기(월) 자료를 비교한 내적일관성 여부와 다른 통계자료와 유사한 결과를 보이는지 비교한 결과 등을 중심으로 점검한다.

- * 비교성과 일관성은 유사한 개념이다. 일관성은 통계 간 결과가 유사한지 보는 것이고, 비교성은 통계에서 사용한 개념, 분류, 기준 등이 유사하여 비교가능한지를 보는 것이다.

(5) 접근성 및 명확성

접근성은 이용자가 통계자료에 대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하며, 명확성은 통계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정보제공 수준을 말한다. 통계자료의 데이터베이스화, 간행물 및 보도자료 홈페이지 게시, SNS를 통한 속보 전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료를 제공하고 이용자의 검색이 용이하도록 하는 것은 통계의 접근성을 높이는 활동이다. 여기서는 이용자들이 통계자료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 친화적인 절차로 통계정보를 제공하고 있는지, 이용자를 위한 적절한 정보와 지원을 하고 있는지 등을 중심으로 점검한다.

2023년 정기통계품질진단 진단결과보고서

발 행 일 2023년 12월
발 행 인 통계청장 이형일
발 행 처 통계청 통계정책국 품질관리과
대전시 서구 청사로 189
인 쇄 처 위드 나래



안 내

1. 연구보고서의 내용을 발표 또는 인용할 때에는 반드시 올바른 인용 및 출처표시 방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2. 연구보고서의 지식재산권은 통계청에 있습니다.